2023-8호(8. 30.)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재정 정보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근의 입법·재정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 라 북 도 의 회 사 무 처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차 례

【 입 법 분 야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안

1.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 1
2.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3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4

□ 환경복지위원회

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7

□ 농산업경제위원회

1.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18
2. 「먹거리기본법안」 입법예고 ····· 20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3

□ 교육위원회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입법예고 ····· 25
2.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입법예고 ···· 26

차 례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1.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 ····· 31

Ⅳ. 법령 해석 사례

1.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 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41
2.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표지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의 의미(「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등 관련) ····· 44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관련) ····· 51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 · 제4조 등 관련) ····· 54

차 례

【 재 정 분 야 】

Ⅵ. 재정 동향

1. 한국경제의 다섯 가지 모나리자 모호성과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 65
2.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쟁점과 글로벌 영향 분석(경제사회연구원) ····· 72
3. 기후위기와 농업·농촌 대응:폭염(한국농촌경제연구원) ····· 84
4. 2023 전라북도 행복지표 현황(전북연구원) ····· 90
5. 정책지원과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한국지방행정연구원) ····· 98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1. “몰라서 더 낸 세금, 납세자보호관이 찾아낸다”(경상남도) ····· 107
2.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충청북도) ····· 109
3. 전국 최초 민간위탁 종료 후 고용안정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111
4. 국·공립어린이집, 아동돌봄센터 입지분석해 확충 최적화지역 도출한다(경기도) ····· 113
5. 내부업무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전라남도) ····· 115

Ⅷ.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사례

1.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행정안전위) ····· 119
2. 영농정착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이행점검 필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22
3. 아동수당 급여 사업의 철저한 집행 관리 및 추계 적절성 제고 필요(보건복지위) ··· 125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대구 중구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 관련 ····· 133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안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안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9

발의연월일 : 2023년 6월 1일

발 의 자 : 김선영·전석훈·홍원길
김태희·신미숙·이용욱
서현옥·김규창·이용호
김도훈·이재영·고은정
이병길·김완규·박재용
전자영·박옥분·성기황
김태형·최종현·정윤경
장민수·이영봉·김옥순
황세주·이채명·유종상
김동규·임창휘·변재석
이경혜·이성호·남경순
의원(33명)

1. 제안이유

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탄소중립과 디지털 산업으로 경제 및 사회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나.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탄소중립, 디지털 산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하는 반면, 기존 고탄소, 노동집약산업 등은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산업이 축소되거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과 더불어 노후 산업단지 증가로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도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종사자는 전국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음.

라.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산업 및 중소기업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한 노동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마. 이에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주의 피해와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노동전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7조).

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산업·노동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노동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감소·소멸하는 산업 또는 직무·직업(이하 “직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른 산업 또는 같은 산업 내의 다른 직무등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및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지역에 대하여 노동전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 지역 · 직무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 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 · 지역 · 직무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노동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구조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 ·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 시행 시 관련 계획 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 시행 시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노동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노동전환의 지원)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
6.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
8. 노동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 ①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전환의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노동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산업·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환업종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노동전환 지원업종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손한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6.2.

발 의 의 원 : 손한국, 김대현, 김지만, 김태우, 박종필, 윤권근, 윤영애, 이성오, 이영애, 전경원, 황순자 의원(11명)

1. 제안이유

상하수도, 가스관 등과 같은 기반시설 정비 및 건축물 공사와 같은 건설사업장에서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거나, 주변에 공사자재, 폐기물 등을 보도에 방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및 운영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도우미’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보행안전도우미의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주체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및 운영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외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도모함(안 제4조)

다. 시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수행 및 내용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이수증 발급, 교육방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보행안전도우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지침 수립에 대한 근거 및 관련 내용을 마련하고,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직무, 의무,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에서 제10조)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한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6.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도우미를 육성·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지하철 건설 공사 등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제5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의 이해

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육의 실시 및 이수증 발급에 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지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

② 그 외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자격) 보행안전도우미는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시 또는 위탁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에 참여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직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미비 시 해당 시공자에게 보수 요청
3.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
4. 임시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제9조(의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보행안전도우미의 직무 및 의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제정]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장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함(제2조).

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7조).

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2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8-18~2023-08-2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선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 주권자들은 이전 조사결과만 제공받습니다.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왜곡된 투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미 1988년 캐나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 판시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은 법적으로 아예 금지

기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늘려야 합니다. 6개월 공소시효로는 범죄 증거 확보 등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1일 전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1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자료 보관기간도 확대하려 합니다. 주권자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소시효 연장은 시간에 쫓긴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안 제108조 제1항 등).

□ 환경복지위원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1호, 2023. 7. 11., 제정]

◇ 제정이유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216호, 2023.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수립해야 하는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하려는 경우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토킹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제2조)

스토킹 실태조사에는 성별, 나이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스토킹의 발생 원인, 유형 및 빈도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스토킹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내용(제3조제4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이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립·시행하는 재발방지대책에는 스토킹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의 취학 지원(제4조)

1) 피해자 등이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키도록 함.

2) 피해자 등이 중·고등학교의 학생인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도록 함.

라.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제8조 및 별표 2)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교육 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정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8-21~2023-08-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에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64.2%가 관련 정책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구성원을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법률 제19253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40호, 2023. 8. 16., 제정]

◇ **제정이유**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 **주요내용**

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제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훈련·상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제9조부터 제14조까지)

1)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 내의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 ·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인 또는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여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하여 교육, 돌봄, 문화 등 특화된 농촌 경제 ·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촌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농촌 경제 · 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기부금품 접수 및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제19조 및 제20조)

1)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 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농촌 경제 · 사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 · 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종류와 규모, 소요 예산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먹거리기본법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8-16~2023-08-30)

◇ 제정이유

먹거리 문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우리 정부의 먹거리 관련 정책은 소관 업무에 따라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공통의 정책 목표 및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먹거리 공공성에 기반하여 국민이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및 유통, 소비를 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무총리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전략에 따라 5년마다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무총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에 관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국가먹거리위원회는 성과지표에 따라 매년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함(안 제17조).

바.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관련 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둠(안 제2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8조).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7. 2.] [대통령령 제33610호, 2023. 6. 30., 제정]

◇ 재정이유

경매 · 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매 ·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25호, 2023. 6. 1. 공포, 7. 2.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국세 및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등(제2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 감독함.

나.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마련(제3조)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체납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고지 또는 신고 건별 국세 금액에 국세 안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그 임대인이 소유하였던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함.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체납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고지 또는 신고 건별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금액에 국세 안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그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과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징수하도록 함.

3) 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을 하려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 제104조, 「국세징수법」 제72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8조에 따른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등을 적은 안분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도록 함.

다.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마련(제4조)

1)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및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금액을 징수하도록 함.

2)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및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외의 지방세는 고지 또는 신고 건별 금액에 지방세 안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그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함.

3) 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을 하려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 제104조, 「국세징수법」 제72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8조에 따른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등을 적은 안분 적용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도록 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7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8-14~2023-08-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요건으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또한 도시의 경제 및 사회적 생산성을 감소시켜 도시를 쇠퇴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구체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단순히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으로 규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출생률이나 연령별 인구비율 등 인구의 생산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 교육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권은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8-13~2023-08-27)

◇ 제안이유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내용과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여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나며,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폭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에 관해서만 규정할 뿐, 학생의 일반적인 문제행동에 대한 교원의 즉시 조치 및 이에 관한 면책 규정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 단위로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조정 단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각 학교 별로 행동교칙을 수립하여 학생의 행동 기준 및 위반 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교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행동교칙 위반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지도 또는 조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교원이 성실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함(안 제18조).

바.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최형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8-13~2023-08-27)

◇ 제안이유

18개 시·군 중 14개 지역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된 경상남도의 미충족 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분율(%)은 2020년 8.4%(전국 1위), 2021년 7.2%(전국 2위)로 전국 최하위이고, 지역의 의사 인력 확보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인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5명으로 전국 3.1명보다 적은 상황임.

또한 인구 십만명당 의대 정원은 2.3명으로 전국 5.9명 보다 현저히 낮은데, 이는 경상남도와 인구규모가 유사한 전라북도 및 광주광역시의 의대정원과 비교하면 겨우 40%에 불과한 실정임. 사실상 경상남도 도민들이 건강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한편, ’27년~’29년 경상남도 내 공공병원 4개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및 어린이 재활병원 등이 건립될 예정으로 적정 의료인력 투입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 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에 분포하고 있고, 의사들의 지역근무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개원 및 운영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임.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의사인력의 지역(지방광역시 혹은 도 지역)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을 꼽고 있는 바, 의료인력의 불균형 분포문제 및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선발 · 교육 · 배치하는 일련의 절차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져야 함.

다만, 의대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국립대학 뿐만 아니라 대학자체예산 활용이 가능한 사립대학 및 의과대학의 교원, 시설 및 교육과정 등의 설치기준을 갖춘 기관도 의대설립 주체에 포함시켜 의대설립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경상남도 내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도내 지역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별도로 마련하여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등에서 의무복무토록 할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이행 후 도내 병원 개원 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내에서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의과대학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대학과 관계 법령에 따라 의과대학의 교원, 시설 및 교육과정 등의 설치기준을 갖춘 기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입학정원은 도내 적정의사인력, 의료서비스 공급상황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 15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도내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에 한하여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10년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등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모집하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장학금 지원근거 등을 마련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수련 시 반드시 도내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수련받도록 함(안 제11조).

라. 의무복무를 이행한 지역의사에 대한 도내 병원 개원 시 보조금 지원(융자 및 보조 등),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근거 규정함(안 제12조).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 (국회도서관, 제227호, 강명원)

□ 배경

○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산업 활성화를 통해 2023년까지 20조 원, 2027년까지 누적 100조 원의 수출 효과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특히 정부는 기업이 전기차 전용 공장 신규 시설투자를 할 경우 최대 35%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발효에 따라, 프랑스는 유럽산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 보호정책을 강조하며, 친환경산업 투자 시 세액공제, 전기차 구매지원금 기준 강화 및 신규공장 설립 시 행정절차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녹색산업법(안)' (Projet de loi sur l' industrie verte)을 2023년 5월 발의하여 입법 중에 있다.

○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안)'을 살펴보는 것은 첫째, 배터리, 풍력, 태양광 등 유럽의 친환경 산업정책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률을 재정비하고, 둘째, 무공해 자동차 및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개편되고 있는 세계의 무역장벽에 대비하여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9430호)」

□ 도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는 올해 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내 녹색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신산업으로의 확대·육성 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한 중동과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였다.



* 출처 : 환경부 2023년 업무보고

○ 또한, 전기자동차 신규 시설투자도 국가전략 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술 등을 국가전략 기술로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프랑스는 2023년 5월, 배터리·히트펌프·녹색수소·풍력터빈·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시 세액공제, 전기차 구매보조금 기준 강화,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탄소화 지원, 녹색산업 관련 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재산업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녹색산업법(안)'을 발의하여 추진 중이다.

□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안)'

1. 입법 배경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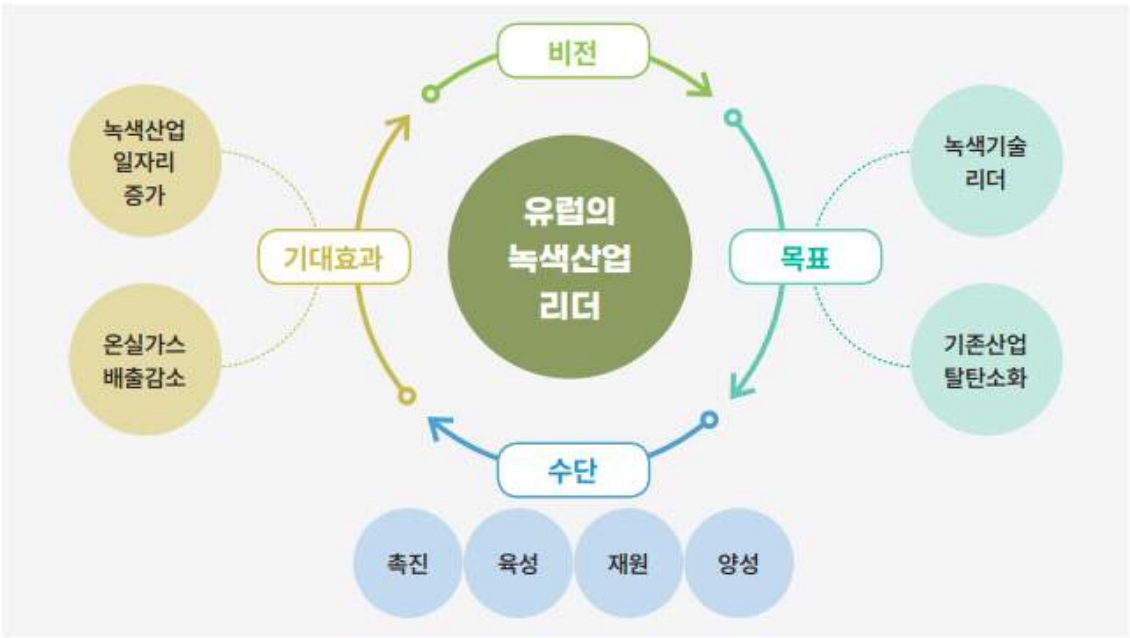
○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 이후 유럽산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산업 보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친환경 전환과 제조업 강화(재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입법 방향은 프랑스 산업의 재산업화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 법안 목적 및 기대효과

○ 50년 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탈산업화를 진행해 온 프랑스는 최근 기후변화 위기 고조 및 녹색기술 경쟁 심화에 따라 유럽지역 내에서 녹색산업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하여 2023년 5월, '녹색산업법(안)'을 발의하였다.

○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의 목표는 크게 2가지로 기존 산업을 탈탄소화하고 녹색기술의 리더로 성장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녹색산업 일자리 증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의 개요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프랑스 '녹색산업법(안)' 개요



* 출처 : 프랑스 딜로이트 로펌(Deloitte Société d'Avocats) 사이트

3. 법안의 핵심 방향

(1) 법안 구조: 총3편 5장으로 구성

○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안)’은 총 3편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제1편은 녹색산업 정착 및 산업부지 조성을 위한 조치, 제2편은 공공발주(Commande publique)의 환경문제, 제3편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규정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제1편(제1조~제11조)은 녹색산업 부지조성과 녹색산업화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제2편(제12조~제14조)은 「공공발주법전(Code de la commande publique)」의 관련 사항에 대한 개정, 제3편(제15조~제19조)은 미래기후저축계획[1]과 유럽 장기투자 펀드개발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법안의 우선순위 및 세부 이행방안

그림 3 녹색산업법(안)의 4가지 우선순위와 15개 세부 이행방안



(3) 법안의 주요 내용

1) 산업부지 조성 및 재산업화 가속화

○ 산업부지 조성을 위하여 접근 인프라, 환경연구, 공해 제거, 전기설치 등을 위한 주요 산업부지 개발비용을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한 ‘France 2030’ 투자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토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기금과 2023년~2027년 사이에 10억 유로 투자를 약속한 국토은행(Banque des Territoires)에서 개발비용을 조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산업부지 계획의 일부가 될 2,000헥타르(hectares)의 토지를 수용하며, 조달된 개발비용 중 4억 5천만 유로는 향후 5년 동안 50개의 산업부지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 또한, 6억 유로는 산업용 부동산 건설, 산업부지의 오염제거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와 산업 에너지 및 친환경 전환 촉진을 목표로 하는 계획에 사용된다. 특히 환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승인 취득 기간을 평균 18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재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해당하는 지역의 산업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1억 유로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 산업 분야는 섬유, 자전거, 시계 등과 같이 생산적 투자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경제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되도록 정부가 레지옹(Régions)과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녹색산업투자 세액공제 및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 지원

- ❍ 친환경 전환에 참여하는 산업부문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부터 녹색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녹색산업투자(Investissements Industries Vertes) 세액공제는 차세대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및 열펌프 생산에 필요한 유형 및 무형의 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액공제 기준은 투자 비용에 비례하며, 세율은 유럽지침에 따라 20~45%까지 다양하다.
- ❍ 네트워크 및 열 재생에너지와 같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투자 및 연구개발, 지출과 관련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추가 보조금과 새로운 유형 및 무형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탈탄소화 계획에 약 5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와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규모나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규모의 기업을 위한 5백만~1천만 유로의 녹색 대출, 대출 보증, 중소기업을 위한 탈탄소화 보조금 등 기업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탈탄소화 지원을 위해 친환경 조건이 일반화되며, 기업의 규모에 맞는 단순화된 환경진단을 수행하고 환경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공적부문 투자은행(BpiFrance)을 통해 친환경 전환 부문에 지원할 뿐 아니라, 에너지와 환경 및 글로벌 기후기금에 4억 5천만 유로를 지원하여 에너지 및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 친환경적 공적부조 및 친환경 보조금 조건화

○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공적 지원 시에 환경영향 진단을 조건으로 하여, 각 기업이 '환경 투명성'을 촉진하고 '환경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의 책임있는 사용 등을 통해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탄소배출, 배터리 원산지, 모터 제조과정, 차량에 사용된 강철 및 재활용, 바이오 재료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무탄소 에너지 생산 비중이 높고 유럽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자동차를 지원하는 별도 법률을 정부가 2023년 말까지 제정하여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프랑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기준 및 보조금액

(2023년 7월 현재)

전기자동차 신차 구매시, 세금을 포함한 구매가격의 27% 한도 내에서, 자동차 가격이 최대 47,000유로 이하인 경우에 친환경 보조금으로 5,000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득이 연 14,089유로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 2,000유로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의 경우 1,000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구분		구매보조금(유로)	
		개인	법인
승용차	판매가 47,000유로 이하 (법인 : 45,000유로 이하)	5,000 ~ 7,000	3,000
승합차	판매가 47,000유로 이하 (법인 : 45,000유로 이하)	6,000 ~ 8,000	4,000

* 출처 : 프랑스 환경부 사이트(ecologie.gouv.fr)

4) 녹색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 엔지니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 5월까지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 50,000명 양성 및 엔지니어(Mines-Télécom) 학교 22% 증설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엔지니어 학교 교직원의 여성채용 확대, 전문면허·석사 및

박사과정 정원 확대, 녹색화 및 산업의 탈탄소화와 관련된 교육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France 2030’에서 7억 유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 2027년까지 100개의 녹색산업 학교를 설립하고 학습자 수를 2배로 늘리며, 실업계 고등학교와 기업 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동시에 녹색산업에 관심이 있는 인재 Pool을 구축하고 엔지니어 자격에 대한 경험 검증을 통하여 관련업계 채용을 확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 기업참여를 통해 중학교부터 산업 전문직을 발굴하고, 모든 기업소개 플랫폼에서 교육종료 시에 고용률 및 급여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향후 주목할 점

- 우리나라는 친환경산업을 촉진하는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안)’으로 인해 2차전지, 히트펌프,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분야 등의 청정기술 분야에서 시장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녹색산업 수출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기술 제휴 및 협력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동시에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안)’으로 유럽 중심의 생태계 구축 정책이 구체화된다면, 해외 기업의 프랑스 시장 신규 진입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더불어 향후 프랑스의 전기차 구매 지원금 지급조건 강화로 추가될 ‘탄소발자국’ 세부 기준에 의해 해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와 배터리가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다.
- 프랑스는 ‘France 2030’을 통해 탈탄소 산업건설을 위한 에너지 분야와 미래교통수단 등에 2030년까지 340억 유로의 국가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다만, 프랑스 내에서도 긍정적인 시각과 더불어 다소간의 유보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정책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1) 미래기후저축계획(Plan d'épargne avenir climat)이란, 은행과 보험사에서 판매할 수 있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위한 저축상품으로, 부모가 자녀의 출생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아무 때나 개설할 수 있고, 18세 만기 시 과세와 사회보장기여금① 면제되며, 저축금액의 상한선은 2024년 예산법안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 ‘프랑스 2030’이란, 프랑스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투자계획(340억 유로)으로, 여기에는 5년에 걸쳐 300억 유로의 보조금과 40억 유로의 자금조달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2년에는 35억 유로가 할당되었는데, 이 중 28억 4천만 유로는 보조금으로, 6억 6천만 유로는 지분투자로 배정되었다.

3) 트리플 E(Excellence Environnementale Europeenne)란, 유럽의 환경우수성 기준에 충족하면 부여되는 라벨로, 무탄소 에너지, 생물 다양성 및 수명주기 분석을 통합한 자발적 표준으로 기존 및 향후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4)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이다.

Ⅳ. 법령 해석 사례

Ⅳ 법령 해석 사례

1.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3-0574, 2023. 8. 4., 민원인]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각주: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 규제 ·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참조), 이하 같음.)(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함)를 설치 ·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각주: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 참조), 이하 같음.)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6 Ⅱ 제5호 534란 및 530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각주: 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에 설치된 정지선표시 외에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른 신호 · 지시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6 II 제5호 534란 및 530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각주: 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또는 그 앞의 정지선표시) 외에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른 신호·지시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로교통법」 제4조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인 안전표지의 종류 중 하나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인 “노면표시”를 안전표지의 하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6에서는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II 제5호 534란에서는 노면표시 중 “자전거횡단도표시”는 “자전거등의 횡단도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같은 표 II 제5호 530란에서는 “정지선표시”는 “운행 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각각 그 “표시하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표시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는 차마 운전자에게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가 아니라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II 제5호 521란에서는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노면표시의 하나로 “일시정지표시”를 규정하면서, 그 “표시하는 뜻”을 ‘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것을 지시하는 교통안전시설로서의 노면표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각주: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판결례 및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204 판결례 참조) 있는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II 제5호 521란의 일시정지표시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는 그 자체로는 차마 운전자에게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는 아니라고 보는 것(각주: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판결례,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204 판결례 및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68 판결례 참조)이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는 그 자체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라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은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45호로 「도로교통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각주: 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6. 30.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참조) 신설된 것으로서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는 특정한 교통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으로, 차마의 운전자가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교통상황과 관계없이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그 앞의 정지선표시 그 자체가 차마 운전자에게 일시정지를 할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6 II 제5호 534란 및 530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각주: 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또는 그 앞의 정지선표시) 외에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른 신호·지시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표지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 의 의미(「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등 관련)

[법제처 22-0622, 2022. 10.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서는 어린이(각주: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함)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교육시설등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이용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회답】

어린이교육시설등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이용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유】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서는 어린이교육시설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교육시설등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이용되는 것이 같은 호에 따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규정의 취지,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제53조의3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 즉, 해당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0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제7호) 및 어린이통학버스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제8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은 어린이교육시설등에서 직접 차량을 사용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해당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된 차량만을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요건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어린이교육시설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어린이교육시설등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까지도 포함(각주: 교육부 고시 제2022-2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Ⅳ.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제1호(기본사항) 아목 및 자목 참조)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통학 등’을 물리적으로 특정된 학교와 집 사이의 이동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서 자동차의 이용이 상시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교육과정의 일환에서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통학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은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이동 중에도 존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이동은 일상적인 통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거리 운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자동차에 탑승하는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통학의 경우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없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는 19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5호로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이하 “97년 「도로교통법」”이라 함)에서 교통사고위험 대처능력이 취약한 어린이 등을 보호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등을 신설하면서 함께 신설된 규정으로서(각주: 97년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2, 제48조의3 및 제48조의5 참조), 이후 신고대상인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등에서 어린이 교육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추가하고(각주: 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7. 1.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7.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특별한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요구되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모두 신고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며(각주: 2013. 5. 1. 의안번호 제1904773호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9.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2020. 4. 23. 2017헌마479 결정례 참조),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안전확인의무를 부여(각주: 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9.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는 등 어린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통학 등’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령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으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외에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도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에 따른 비상시적인 활동을 위한 이동의 경우에도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이외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에 차의 운행 구간과 운행 횟수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운행 구간과 운행 횟수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령에서 '정기적인 노선과 상시적인 운행'을 전제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할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교육시설등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이용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관련)

[법제처, 의견23-0288, 2023. 8. 4., 경상남도 진주시]

【질의요지】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판결 참조).

이 사안은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서는 지방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56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에서는 지방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가 직접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하는 지방의회와의 협의가 “동의나 합의”를 의미하는지,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지를 불문하고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만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정관 변경 절차를 추가하게 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2. 11. 8. 의견제시 22-0293 참조).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그런데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공단에 지방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2. 23. 의견제시 21-0061; 법제처 2021. 7. 8. 의견제시 21-0179 참조).

나아가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나 위임 규정 없이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1조 및 제76조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설립된 지방공단의 운영상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4. 28. 의견제시 23-0083 참조).

따라서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조 등 관련)

[법제처, 의견23-0245, 2023. 6. 16., 서울특별시]

【질의요지】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교육전문직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서 교육감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별(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 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로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는 인사위원회가 관장하는 사무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조의4제4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소속 기관의 장별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경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등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경징계 권한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제2호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의 11개 교육지원청 별로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있으므로 임용권(경징계 권한)을 위임받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이 그 관할 인사위원회에 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무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은 상위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바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여 조례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징계의결 요구와 관련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확인·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 특별징계위원회,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영 제21조에서는 공립대학징계위원회를, 같은 영 제25조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서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공립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특별징계위원회는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등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해당 시·군·구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사건에 한정하여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1항에서 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국립의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6항에서는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호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 중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경징계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관할하고 있는바, 경징계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는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이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소속 교육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의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은 상위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바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여 조례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징계의결 요구와 관련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의 관련 규정을 확인·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이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를 말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는바, 이러한 소속 직원에는 교육공무직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징계 등 교육감의 인사에 관한 전속적인 권한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 정 분 야 】

Ⅵ. 재정 동향

Ⅵ 재정동향

1. 한국경제의 다섯 가지 모나리자 모호성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2023. 7.)-

□ 개요

○ 최근 한국 경제는 그 방향성을 알기 어려운 '모나리자 모호성'이 나타나고 있다. '모나리자 모호성'이란 이코노미스트 지(The Economist, April 17th 2023)가 "How to explain the puzzle of the world economy"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펜데믹 이후의 경제가 모나리자 같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모나리자 효과'로 비유한 데에서 착안하였다. '모나리자 효과'의 원래 의미는 '모나리자'라는 초상화 속의 여인이 미소를 짓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표정하게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미국 경제에서 관찰되는데, 고금리로 경기 하강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등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급증하고있다. 최근 한국 경제도 경제 상황 판단에 정부와 민간의 시각에 차이가 크며, 나아가 경제전문가 및 경제연구기관 간 경기 방향성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면서, 최근 대두되는 경제 현안에 대한 시장 내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 경제의 '모나리자 모호성'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찾아, '모나리자 모호성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한국 경제의 다섯 가지 모나리자 모호성 현상

(1) (경기 방향성 혼란) 동행지수와 선행지수의 논리적 비일관성

경제 현황이 가장 정확하게 반영해야 할 경기종합지수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못하면서 현재의 경기 판단과 미래의 경기 전망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1월(98.9p)을 저점으로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상승 시간이 짧아 현재의 한국 경제가

일시적 반등 국면에 있는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1년 6월 102.2p를 고점으로 약 2년 동안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경기 전환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부문별 수출 경기의 격차) 대중국·반도체 수출 침체 속 이외 수출 경기의 선전

전체 수출 경기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반도체 수출과 대중국 수출의 감소가 침체의 체감도를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그러나, 6월 수출증가율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6.0%이며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19.0%인데, 대중국 수출을 제외한 수출증가율은 △2.2%에 불과하다. 또한 6월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28.0%인데,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0.0%로 반도체 이외 수출은 1년 전과 동일한 규모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3) (인플레이션 착시) 명목 지표의 호조 속 실물 지표의 정체

물가상승률은 낮아졌으나 물가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아 가계의 고물가에 따른 구매력 위축으로 실제 소비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 중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 전년동월대비 6.3%를 고점으로 올해 6월 현재 2.7%까지 하락하면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0%에 접근 중이다. 그러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전 품목이 평균적으로 10%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이다. 한편, 그러한 영향으로 5월 경상기준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 대비 0.5%가 증가하였으나, 불변기준(물가상승분이 제거된 실질소비)으로는 오히려 0.6%가 감소하였다. 이는 가계의 체감상 명목 지출액은 증가하였으나 그 지출을 통해 구입하는 소비량(실질 지출액)은 감소하면서 삶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4) (산업별 경기 양극화) 산업별 상이한 업황으로 개인별 체감 경기 수준과 방향성에 격차가 발생

제조업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산업 경기의 양극화가 진행 중인 것도 경제 방향성을 혼란케 하는 요인이 된다. 제조업 경기는 코로나 대확산 충격 이후 빠른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 이후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반면, 서비스업 경기는 전 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현재 제조업에 비해 생산 회복 수준이 크게 높은 편이다. 5월 현재 생산지수(S.A. 2020=100p)는 제조업이 106.7p인 반면 서비스업은 115.0p에 달한다. 이는 고용시장에서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하는데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개인이 어느 산업군에 있는지에 따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심리지표와 실물지표의 괴리) 경제심리 회복 수준에 못 미치는 내수 경기

가계 및 기업의 경제심리는 개선 중이나, 실제 소비와 투자에 뚜렷한 방향성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심리(소비자기대지수)는 작년 하반기 이후, 투자심리(기업경기실사지수)는 올해 초 이후 개선 중이다. 소비자기대지수(CCSI)는 작년 7월 86.3p를 저점으로 상승하여, 6월 100.7p로 기준치 100p를 상회하였다. 한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업황전망)도 올해 2월 68p를 저점으로 상승하면서 7월 현재 75p를 기록하며 실질적인 평균 수준(79p, 통계가 편제된 2003년 2월 이후 평균치)에 접근 중이다.

그러나 실제 소비와 투자 지표의 뚜렷한 회복세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국민계정의 민간소비는 작년 4분기의 감소세(전기대비 △0.5%)에서 올해 1분에 0.6%의 증가세로 전환되며 소비 회복의 기대감을 확산시켰으나, 2분기 다시 △0.1%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설비투자도 작년 4분기 전기대비 2.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5.0% 및 △0.1%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내수가 회복되는 것인지 침체되는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도 확신할 수 없는 모습이다.

□ 한국 경제의 모나리자 모호성의 원인

(1) (잠재성장률 하락)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제의 기초 체력 약화

한국 경제의 모나리자 착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성장잠재력 고갈로 복원력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번 코로나 대확산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서, 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경기 회복력이 크게 약화되어 작은 대내외 이벤트에도 경기 민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경제는 대외 메가쇼크(거대 충격) 이후 예외 없이 잠재성장률이 급락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1991~1997년) 연평균 7.3%에서 외환위기 이후(1998~2008년)에 5.1%로 하락하였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2009~2019년)에는 다시 3.0%로 하락하였으며, 이번 코로나 위기 이후(2020~2028년)에는 2.2%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코로나 대확산 충격 이후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약화(잠재성장률 하락)로 경제의 역동성은 물론 안정성도 낮아져, 대내외 여건의 사소한 변동에도 국내 경기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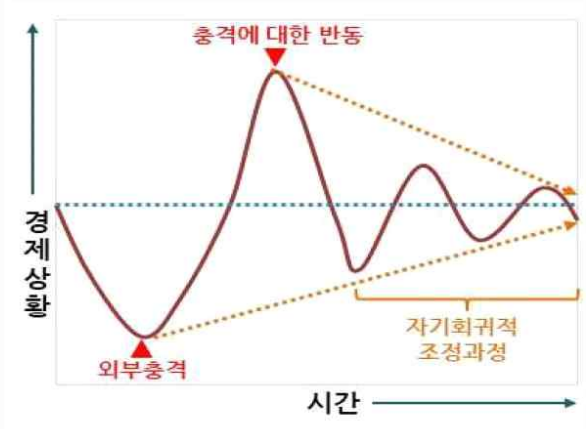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 (정상적 자기회귀 파동) 대규모 외부 충격 이후 경제의 정상화 경로로 복귀하는 과정상의 경기 등락

외부 충격 이후의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상 경제 지표의 잦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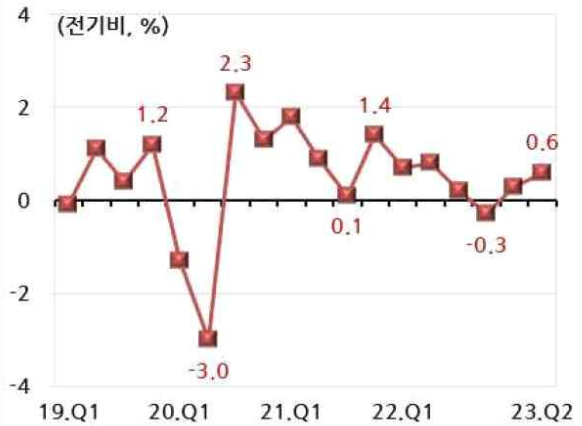
등락이 나타나면서 경기 방향의 모호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 경제는 과거의 경험상 코로나 대확산 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이 발생하면 초기에는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되고 그 직후 경제의 회복력과 기저효과에 의해 충격에 대한 큰 반동이 나타난다. 이후에는 충격과 반동력의 파급영향으로 인해 경기 진폭은 점차 축소되면서 동시에 주기는 짧아지는 소파동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잦은 등락을 지속하는 것도 2020년의 코로나 충격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경제변수의 시간에 따른 자기회귀적 반응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분기 경제성장률(S.A.) 추이 >



자료: 한국은행.

(3) (글로벌 디커플링) 미국과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급증

한국 경제의 해외 수요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방향성에서의 모나리자 착시 현상이 한국 경제에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에도 미국 경제의 향방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아 세계 경제의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최근 고용시장이 강세를 지속하는 등 뚜렷한 경기 침체의 전조가 관찰되지 않으면서 향후 물가만 안정된다면 1990년대 후반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시대에 나타났던 '골디락스(Goldilocks)'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도 상존하고 있다. 한편 중국 경제는 기대되었던 리오프닝(reopening)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경착륙(hard-landing) 우려가 확산 중이다. 중국의 소비 및 수출은 지난 3~5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6월에는 다시 소매판매 증가율이 급락하고 특히 수출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4) (확실한 경기진작책 부재) 실물 경제의 회복 속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부재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경기진작책이 요구되나, 대내외 정책적 여건의 제약으로 경기 국면 전환을 위한 정부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통화정책은 당분간 경기진작을 위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의미로서 금리 인하 기조로의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다. 미 FED의 기준 금리 인상이 지속 중이고 국내에도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거시경제정책의 다른 한 축인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최근 몇 년에 걸쳐 급증한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 즉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경과 같은 적극적인 경기진작책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국가채무/GDP비율은 37.6%에 불과하였으나, 그동안의 잦은 추경과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의 부족으로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2023년에는 49.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5) (다발성 리스크, multiple risk) 국내외 다양한 리스크의 동시적 부상에 따른 불확실성 증폭

코로나 위기 이후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국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부상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코로나 대확산 발 대내외 수요 침체, 미국의 대중국 경제 봉쇄, 글로벌 인플레이션 쇼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 FED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경착륙 등의 다양한 대외 리스크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내 PF 시장의 자금 경색,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 불안, 우크라이나-러시아 '흑해곡물협정' 종료 가능성 등의 새로운

리스크들이 등장하면서 경기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 시사점

○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를 통해 민간주체들의 경제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회귀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장 우선적으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본 등의 양적 생산요소 확충은 물론 기술·인적자본 등의 질적 생산요소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시급히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경제의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내수 지향적 고부가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현재의 높은 해외의존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산업 지형의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부합되는 수출 지역 및 품목 다변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근본적인 제약 조건으로 경기 진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면, 재정 당국의 집행률 제고, 통화 당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미시정책이 동원되어야 한다. **다섯째,** 최근 부동산 PF 시장 경색, 집중호우에 따른 물가 불안 등의 급부상하는 리스크들에 대응하여, 부동산 시장 및 농축수산물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에 주력해야 한다.

2.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쟁점과 글로벌 영향 분석

-경제사회연구원(2023. 8.)-

Ⅰ. 들어가며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2년 8월 16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에 서명하면서 언급한 말이다. IRA를 두고 미국에서는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인 약속으로 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The White House, 2023).

○ IRA는 바이든 정부가 초기부터 추진해 온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의 축소 수정 버전으로, 물가 안정화, 정부 세수 확대, 그리고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목표로 한다. 다만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이 법안을 통해 배터리, 전기차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굴기를 막고, 미국이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패권을 쥐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정인교, 2022).

○ 반드시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허용된 국가의 핵심 광물과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IRA의 보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이 규정은 중국 및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우려 집단(Foreign Entities of Concern, FEOC)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가세하는 것을 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첨단산업으로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핵심 산업과 깊은 연결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법안의 중요한 쟁점과 글로벌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난해 IRA 발효 이후, 2023년 3월에 IRA에 관한 세부 지침이 공개되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IRA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국과의 외교 통상 협력 방안을 세밀하게 모색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는 IRA가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차별적인 법안이며, 특히 북미산 전기차에만 부여되는 혜택이 WTO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럼에도 법안의 준수는 불가피하며, 관련 산업의 성과를 유지하고 미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 미 에너지부가 4월 17일에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 공제 대상으로, 북미 조립과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7개 제조기업의 22개 모델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현대자동차의 GV70 전기차가 목록에서 제외된 점은 업계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미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정책 모니터링 및 다양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IRA의 주요 쟁점

□ 최근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의 IRA

○ 2023년에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국 경제의 둔화,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의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2.8%로 예상되었다(IMF, 2023).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화에 따른 이익 분배의 불균형,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자주의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켰고, 이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성장 속도를 저하하고, 해외 투자의 규모를 크게 축소시켰다. 이른바 ‘글로벌화의 둔화(Slobalization)’ 현상이 확대되었고, 글로벌 공급망의 파편화 현상도 발생하였다. 주요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내부 공급망 구축에 힘쓰는 추세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의 증가로 이어졌다.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IRA와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의 법안을 통해 기업에 생산 및 공급망 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수익 발표 보고서를 대규모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 2023). 기업들이 지정학적 안정성을 찾고, 생산 및 공급망 전략을 재조정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IRA의 주요 내용과 쟁점

○ 바이든 정부는 IRA가 발효되기 전 2021년 7월에 '미국 경제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더 나은 재건법'이 과도한 예산으로 미 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가 지체되는 동안,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수단이라는 명목으로 IRA가 제안된 것이다. IRA는 2022년 8월 7일에 미 상원에서 가결되고, 12일에는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같은 달 16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최종적으로 발효되었다. 청정에너지 보조금과 기타 인센티브를 둘러싼 일부 반대 여론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였지만, 비공개 협상으로 진행하고 외부 로비 활동을 차단하며 법안을 수정함으로써 전례 없는 속도로 법안이 발효되었다. 실제로 미국 관련 업계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기차 산업 역시, IRA가 의회를 통과하는 시점에서야 그 내용을 파악했을 정도로, 법안의 상정부터 의회 통과, 대통령의 서명, 그리고 발효에 이르는 과정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되었다 (정인교, 2022).

○ IRA는 크게 총 8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제 I 편인 금융위원회(Committee on Finance)에서 다루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자 감축, 처방 의약품 가격책정 개혁, 건강보험 보조금, 에너지 안보 등을 포함하며, 제 D 하위편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청정차량, 탄소 배출 감소, 청정에너지, 에너지 안보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표 1> 참고). 제4부 청정차량에서는 차량 보조금

지급을 위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구성품에 대한 구체적 금액(각각 3,750달러)이 제시되었으며, 해당 차량의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 광물 중 일부가 해외 우려 집단에 의해 추출, 가공, 재활용, 제작 또는 조립되었다면 이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표 1> IRA 내 '제 I 편 금융위원회' 구성

항목	세부 내용
제 A 하위편 적자 감축	제1부 법인세 개편
	제2부 법인 주식 환매에 대한 소비세
	제3부 국세청의 세원확보 및 납세자 준법 개선
제 B 하위편 처방 의약품 가격책정 개혁	제1부 의약품 가격 협상을 통한 가격 인하
	제2부 처방 의약품 인플레이션 환급
	제3부 제D절 개선사항 및 메디케어 수급자에 대한 최대 직접부담금한도
	제4부 처방 의약품 환급 규칙의 시행 유예의 계속
	제5부 각종 규정
제 C 하위편 건강보험 보조금	
제 D 하위편 에너지 안보	제1부 청정 전기 및 탄소 배출 감축
	제2부 청정연료
	제3부 개인을 위한 청정에너지 및 효율성 장려책
	제4부 청정차량
	제5부 청정에너지 제조에 대한 투자 및 에너지 보안
	제6부 슈퍼펀드
	제7부 청정전기 및 청정교통을 위한 장려책
	제8부 세액공제 통화발행 및 세출
	제9부 그 밖의 규정

자료: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세계법제정보센터(2023) 바탕으로 저자 구성.

○ IRA의 집행 예산은 총수입과 총투자 금액으로 구분된다. Senate Democrats(2022)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11일 기준으로 총 수입은 7,390억 달러, 총투자는 4,330억 달러, 그리고 총재정적자감소 금액은 약 3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참고). 이 중에서도 총투자 금액에서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지출은 3,690억 달러에 이르며,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연장에는 640억 달러가 예정되어 있다.

○ 산업별로 살펴보면, 우선 2023년 3월 31일에 세액공제 대상 국가, 실행

시기 등의 세부 사항을 담은 IRA의 전기차 세부 지침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공개되었다. 미국이 전기차 산업에 중점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성장세에 밀려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중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을 추월하기 위한 접근법을 택하게 되었다 (김연규, 2023).

❍ 올해 4월 18일부터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최종 조립 과정과 배터리 소재의 원산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표 3> 참고). 미 재무부에 따르면, 북미산 전기차는 IRA에 근거하여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간 소득이 30만 달러 이상인 부부나 특정 가격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IRA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전기차 및 관련 산업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미 에너지부가 최근 발표한 IRA 전기차 보조금 대상 기업 명단에는 미국의 제조기업만 포함되었을 뿐,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과 일본의 주요 전기차 기업은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었다. 더구나, 한국 기업은 북미에서의 최종 조립 요건 또한 만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c). 이처럼 국내 전기차 기업들이 북미에서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생산을 늘리지 않는다면,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 다음으로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것은 2023년 4월 18일부터이며, 이는 소비자가 구매한 전기차에 적용된다. 보조금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경우에만 부여된다. 2023년을 기준으로

보조금은 40% 비율로 적용되지만, 2029년까지는 이 비율이 80%까지 상승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는, 북미에서 일정 비율 이상 생산하거나 조립되어야 추가로 3,750달러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 비율은 2023년에 50%로 시작하여, 2029년까지는 100%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2023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중국 등 해외 우려 집단에서 제조한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4년 12월 31일부터는 이 같은 규정이 배터리의 핵심 광물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 분야에서는 IRA의 세부 지침이 공개된 것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미국 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배터리 수요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22년 기준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배터리 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IRA에서 핵심 광물에 대한 보조금 제외 기준, 중국에 대한 일부 원재료 및 부품의 높은 의존도, 유럽연합의 배터리 공급망 강화 정책 등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와 기업은 해외투자와 생산 지원을 통해 공급망을 재편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며,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 전략도 요구된다.

<표 3> IRA 내 주요 항목별 세액공제 적용 및 제외 조건

항목	주요 내용
전기차	■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북미지역: 미국, 캐나다, 멕시코) ■ 배터리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신차의 경우,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공제 적용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공제)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 고소득 납세자 제외 (부부의 경우, 30만 달러 이상; 세대주의 경우 22.5만 달러 이상; 일반 납세자의 경우 15만 달러 이상) - 차종 가격에 따른 제외 (벤, SUV, 픽업트럭의 경우 8만 달러 이상; 일반 세단 등 승용차는 5.5만 달러 이상)

배터리 핵심 광물	■ 2023년 4월 18일부터 소비자 구매 전기차에 적용 (3,750달러 공제) ■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 제조를 위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또는 핵심 광물 협정(Critical Minerals Agreement)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 IRA 상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 핵심 광물 협정 체결국: 일본 ■ 연도별 적용 비율: 40%(2023)→50%(2024)→60%(2025)→70%(2026) →80%(2027~2029)
배터리 부품	■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조립될 때 적용 (3,750달러 공제) - 주요 배터리 부품: 양 음극재, 음극기판, 전해질, 솔벤트, 첨가제 등 ■ 연도별 적용 비율: 50%(2023)→60%(2024~2025)→70%(2026)→80%(2027) →90%(2028) →100%(2029)
해외 우려 집단 (FEOC)	■ 2023년 12월 31일 이후, 해외 우려 집단이 제조하거나 조립한 전기차의 배터리에 장착된 부품이 사용된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2024년 12월 31일 이후, 해외 우려 집단이 추출, 가공, 혹은 재활용한 핵심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자료: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한국무역협회(2023) 바탕으로 저자 구성.

Ⅲ. IRA에 관한 글로벌 영향

□ 중국

○ 중국은 IRA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로 꼽힌다. 특히, 미국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업스트림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IRA의 발효로 이러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대표적인 해외 우려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2023년 이후로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 원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기술 향상을 통한 공급망의 기술 내재화, 제3국으로의 해외 투자 확대, 핵심 광물을 비롯한 국제 원자재 공급망의 보안을 강화하는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 (조은교・심우중, 2023).

○ 중국 내부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 저렴하면서도 높은 품질의 외국산 제품을 차단하고 공급망에 깊이 개입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생산 비용을 상승시키므로, IRA의 목표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완화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CSF 중국전문가포럼, 2022). 또한, 중국 내에서는 IRA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리튬 배터리와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대미 수출 상품에는 IRA로 인한 변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IRA의 해외 우려 집단 조항으로 인해, 수출시장이 미국이나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는 국가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기업들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로의 투자를 통해 생산 거점을 다양화하거나, 관련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

○ 일본은 민관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IRA에 대응하고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2021년 기준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많은 로비 활동을 한 곳은 970만 달러를 투자한 GM이었고, 뒤이은 곳은 620만 달러를 투자한 도요타였다 (변종국・이건혁, 2022). 또한, 혼다와 닛산 역시 각각 250만 달러를 투입하는 등 일본의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미국에서의 로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 또한, 일본 정부는 미국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에 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배터리는 IRA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2019년 미-일 무역협정(U.S.-Japan Partnership on Trade)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USTR, 2023). 일본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인 만큼, 이러한 협정은 일본이 IRA의 배제 조치를 실질적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제공한 것이며,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여 통상 분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하이브리드와 수소 자동차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 사이에 미국과 중국에서는 전기차의 판매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닛산을 비롯하여, 도요타 등 일본 주요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미국 내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품 제작부터 최종 전기차 조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 대만

○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만은 미국, 한국, 일본과 함께 결성한 반도체 공급망 동맹 ‘CHIP 4’를 비롯하여 이미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최근 IRA 시행을 계기로, 대만의 정보기술 기업들은 북미에서의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및 서버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멕시코를 비롯한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 역시 본격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전자제품 OEM 기업인 폭스콘을 필두로, 아이폰 조립업체인 페가트론, HP와 Dell의 노트북 위탁 생산 업체인 인벤택, 아이패드 공급업체인 컴팔 등을 중심으로 대만의 주요 전자제품 제조기업들은 멕시코에서의 생산설비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김철문, 2023). 이외에도 IRA에 대응하여 보조금 지급에 나선 유럽연합의 투자 유치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대만의 배터리 제조기업 ‘ProLogium’은 프랑스 북부 도시 덩케르크에 투자하는 등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IRA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 IRA가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과 같은 기본 질서를 위배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에 더 큰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IRA의 특정 세제 혜택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였다. 유럽 의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IRA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America First'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WTO의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무역을 왜곡하고 보조금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European Parliament, 2023).

○ IRA의 전기차 보조금이 유럽의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조금 경쟁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럽의 자동차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잃거나 미국 시장에서의 지위가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IRA의 보조금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많은 유럽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하였다 (European Parliament, 2023).

○ 유럽연합은 IRA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유럽의 청정에너지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대규모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딜 산업 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및 핵심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포함한 다양한 입법 제안을 통해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대응하여 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산 우선구매법(Buy European Act)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IRA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핵심 광물 협정 공식 협상 지침을 채택하여 미국과의 광물 협정도 논의 중이다. 이러한 협상을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 관련 장비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준하는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였던 나라조차도 다른 회원국과 대응론을 지지하는 상황이다.

Ⅳ. 마무리하며

○ 미국은 IRA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안보라는 논리를 토대로 전기차, 배터리 등을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또한, 미-중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파편화와 블록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에는 도전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IRA 발효로 인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법안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최근 주목할 만한 우리 정부의 대응 사례로는 '민관합동 배터리 산업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활용 전략'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2023a)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5년간 7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이 북미지역에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리튬이온 배터리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추진하고, 그 이외에도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하여 우리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 IRA에 대한 자국 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미국에서 IRA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시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미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특히, 최근 현대차와 같은 국내 전기차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 내에 투자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에 북미 조립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안을 하는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시행될 탄소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부담금에서 미국을 면제 대상 국가로 지정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의 상호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간주한다 (이효영, 2022). 이처럼 레버리지를 활용한 협상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 다양한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미국의 IR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법적 문제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일례로 한-미 FTA와 같은 협정을 통해 대응 방안을 조율하거나, 국내 제도의 정비를 통해 대응 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이나 일본과 같은 전기차 수출국과의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외교 협의 채널을 통해 IRA에서 규정하는 해외 우려 집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우리나라 주요 핵심 광물 조달처로 알려진 공급국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 정부가 경제 안보를 위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으로 평가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경제적 이익과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기후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 ① 폭염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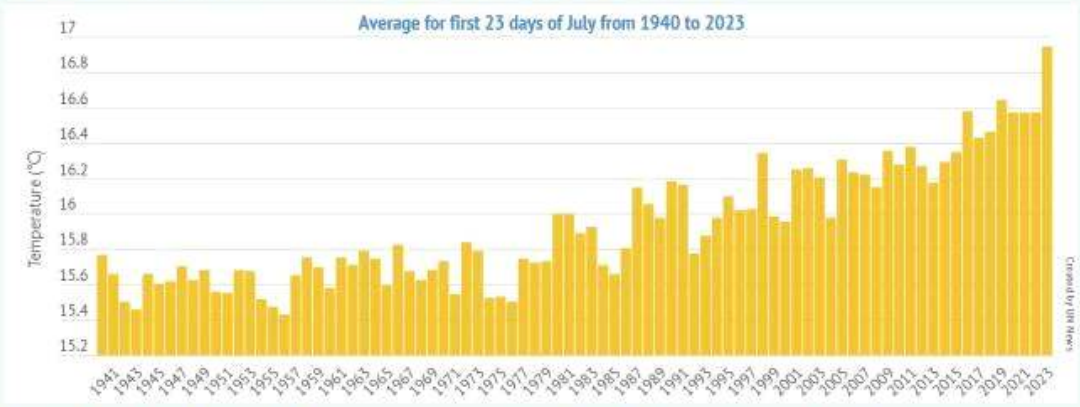
1. 기후위기와 폭염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아닌 지구열대화로 진입

○ 2023년 7월 2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가 아닌 지구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에 진입했다고 경고

-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2023년 6월 평균기온이 1979년 6월 최고기온보다 1℃ 높다고 경고했으며, 미 항공우주국(NASA)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2024년에는 더 무덥다고 전망함.

〈그림 1〉 1940~2023년 7월 1일~23일의 평균 지구 표면 대기 기온 변화



자료: UN News(2023. 7. 27.), "Hottest July ever signals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says UN chief".

□ 한국의 폭염일수 증가 및 평균 최고기온도 상승 추세

○ 평균 폭염일수의 연(年) 합계는 2018년이 31일로 가장 많았고, 연도별 변동은 있으나 증가 추세를 보임. 전국 평균 최고기온도 1973년 17.7℃에서 2022년 18.6℃로 상승 추세

- 2023년 7월 국내 폭염이 관측지점 1개 이상에서 관측된 날은 총 26일로, 19일이 162개 관측지점 중 144개 지점에서 폭염이 나타나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31일 기준 128개 지점에서 폭염이 관측됨.

〈그림 2〉 한국의 1973~2023년 폭염일수 연 합계 및 평균최고기온 변화



자료: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cmmn/main.do), 검색일: 2023. 7. 27.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기상청은 올해 8월, 이상고온 발생 일수가 많을 확률을 40%로 발표

○ 기상청은 2023년 7월 24일에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8월 이상고온 발생 일수가 평년(1991~2020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라고 발표

- 올해 8월, 이상저온 발생 일수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 10%로 전망되어, 이상고온 발생 빈도가 더 높을 가능성을 시사함

- 올해 8월과 10월의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로, 9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전망됨

2. 농업분야 폭염 피해 및 대응책

□ 농업분야 폭염 인명 피해의 빈도는 낮으나 사망확률이 높고, 농작물 피해는 증가 추세

○ 농업분야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재해보험(농작물, 가축) 지급자료를 이용해 연간 피해 규모를 산출

- (인적 피해) 농업인안전보험 지급자료 분석 결과, 폭염으로 인한 보상 건수는 연간 20~150건에 그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연 사망자 수는 3~17명임. 따라서 폭염 사고 발생 확률은 낮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확률이 매우 높은 저빈도-고심도의 구조를 보여 인적 폭염 피해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표 1〉 농업인안전보험 폭염 관련 보상 인원 및 사망자 수

연도	폭염 피해 보상 인원(명)	폭염 피해 사망자 수(명)	사고 발생 시 사망확률
2015	23	6	26.1%
2016	89	17	19.1%
2017	64	12	18.8%
2018	151	8	5.3%
2019	80	10	12.5%
2020	40	17	42.5%
2021	39	5	12.8%
2022	54	3	5.6%

주 1) 각 연도 6, 7, 8, 9월 내 결과질병코드명 중 일사병, 열사병, 자연열, 열탈진으로 추출함.
2) 2021, 2022년 폭염 피해 사망자 수는 지급 종결 기간이 길어 현재 지급 데이터에 미반영되어 과소 산출 가능성이 있음.

- (농작물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자료 분석 결과, 최근 지급건수와 피해면적은 크게 증가하여 2021년 지급 건수와 피해면적은 2018년대비 각각 18.9배, 3.5배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지급보험금은 11.2배 증가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폭염에 대한 사전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은 노지작물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전 대응을 통해 피해를 완화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함.

〈표 2〉 농작물재해보험 폭염 관련 보상

연도	지급건수(건)	피해면적(ha)	총 지급보험금(백만 원)
2015	1,871	-	559
2016	1,836	-	939
2017	6,415	-	3,587
2018	13,169	65,193	6,541
2019	11,987	28,456	2,237
2020	42,630	92,508	10,543
2021	249,067	230,719	73,447

주: 각 연도 6, 7, 8, 9월 내 사고원인 중 폭염으로 추출함.

- (가축 피해) 중소가축인 돼지와 닭, 오리가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능성이 높아 2018년, 2019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으나 2020년대 이후 피해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이는 축산 부문에서 2018년 폭염 피해 이후 축사 관리 및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사전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됨

□ 농업분야 폭염 대응책은 사전/사후, 농업인/농축산물로 구분

○ (농업인 사전 대응) 폭염특보 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요령 알림서비스 제공, 농촌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현장지원 서비스 제공, 무더위 쉼터 제공 및 드론을 활용한 작업 현장 확인 등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시행함

○ (농업인 사후 대응) 농업인안전보험을 통해 폭염 피해 보험금을 제공함

○ (농축산물 사전 대응) 생육상황 상시 모니터링, 폭염 대응 현장기술 컨설팅을 통한 안정생산 지원, 수매비축 및 계약출하 물량 추가 확보와 예비묘 준비 등을 통해 농축산물 생육저하 피해 및 축산 폭염 피해를 예방함

○ (농축산물 사후 대응) 신속한 손해평가 및 보험금 우선 지원과 피해 정도에 따라 어린가축 입식비, 대파대, 농약대 등을 지원함

〈표 4〉 농업분야 폭염 대응책

구분	농업인	농축산물
사전 대응	•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조치 - 알림서비스(온열질환 예방요령) - 현장 지원(취약계층 현장 방문) - 예찰 활동(무더위 쉼터, 드론 활용 작업현장 예찰)	• 농작물 생육저하 피해 사전예방 - 산지 점검(모니터링) - 안정생산 지원(폭염 대응 현장기술 컨설팅) - 수급 안정(수매비축 및 계약 출하 물량 확보, 예비묘 준비) • 가축 폐사 등 축산 폭염 피해 예방 • 축사 점검(사육밀도, 환풍기, 냉방시설 점검) • 시설 개선(축사시설 개보수 지원) - 축사 관리요령 및 폭염 정보 제공
사후 대응	•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 농업재해보험(농작물, 가축) 보험금 지급 • 재해복구비(입식비, 대파대, 농약대) 지급

3. 시사점

□ 기후열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폭염에 대한 대응체계 구체화 필요

○ 기후열대화 등으로 인한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피해 줄이기 일상화가 중요

- (인적피해 줄이기) 폭염 중 농업활동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 폭염 시 즉각 활동을 중단하는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폭염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의 생활화가 중요함. 영농교육 시 사전교육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며, 폭염 시기에는 모니터링과 상시적인 경고메시지를 통해 폭염 회피 생활 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함

- (물적피해 줄이기) 축산분야에서 피해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시설하우스에서도 대비가 철저하다면 피해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따라서 연동하우스에는 차광효과를 차단하는 차광막과 차열망, 차광도포제를 활용하고 안개분무 시설을 설치하여 고온장애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함. 노지의 경우 단기간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고온에 강한 신품종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농업분야 폭염 피해 대비와 대응책을 다시 점검하고 치밀한 중장기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

○ 농업분야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대응과 사후대응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의 정도와 기간 등의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현 시스템의 재점검이 필요. 또한, 농산물 수급의 변화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농업활동, 시설 및 시스템 점검) 작목별, 농업활동 형태별(실내외), 지역별, 시설별 폭염 저감 대책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폭염 취약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폭염 피해 예방 매뉴얼 마련과 시설별 저탄소 폭염 저감 기술 적용 등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 (제도 정비) 폭염으로 인한 피해 시 긴급 보상은 물론 농작물 재해보험 강화 등을 통해 위험 관리 안전망 확충이 중요함. 향후 폭염과 같은 재해가 일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이에 따라 복구비 지원 단가 인상 등의 보상 단가 현실화를 비롯해 농작물 피해 보장 품목의 확대, 요율 및 산정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자발적인 보험 가입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는 중장기적으로 농업인 경영안전망 확충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함

- (농산물 수급 대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일부 품목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작황 및 출하량 변화 등과 더불어 폭우 역시 원인 중 하나이고, 이후 폭염, 태풍 등으로 인한 추가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기후 영향이나 작황 부진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면 농가 경영위험이 늘고 소비자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함. 수급 대응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폭염과 가뭄 등에 강한 품종개발과 재배 방법 등의 연구에도 꾸준한 투자가 필요함

〈표 5〉 8월 가격 상승 전망 주요 품목

구분	7월 가격(상품 기준)	8월 가격 전망	전월 대비 변화율
배추	8,100원/10kg	14,000원/10kg	72.8%
무	12,310원/20kg	16,000원/20kg	29.9%
깐마늘	6,597원/kg	6,800원/kg	3.1%
건고추	12,724원/600g	14,500원/600g	14.0%
토마토(일반)	23,693원/10kg	28,500원/kg	20.3%
오이(백다다기)	54,101원/100개	63,000원/100개	16.4%
수박	2,139원/kg	2,600원/kg	18.6%
참외	29,761원/kg	45,000원/10kg	51.2%
콩	5,285원/kg	5,310원/kg	0.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https://aglook.krei.re.kr/main/uPriceTrend), 검색일: 2023. 7. 27.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2023 전라북도 행복지표 현황

-전북연구원(2023.7)-

□ 연구배경과 목적

○ 국민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부의 증대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지만 국가의 발전 정도나 국민의 복지 수준을 전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행복지표 연구는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행복지표 연구는 개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삶의 질과 만족도를 고려하여 사회의 발전과 개선을 측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전라북도는 2017년 처음으로 도민의 행복도를 조사하고 현황을 분석한 이후 2020년에 두 번째 행복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2023년 전라북도 행복지표의 개선과 새로운 행복지표의 제시 및 현황 조사를 통한 도민의 행복정도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023 전북형 행복지표 구성

○ 2023 전북형 행복지표체계 구성은 어느 지역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 행복도의 측정을 통해 타 시도와 행복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가능성, 시대적 특수성과 지역적 이슈를 반영한 지역특수성을 기준원칙으로 설정함

- 보편성은 행복정도를 알 수 있는 측정가능한 지표에 관한 사항으로 UN, OECD 등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문제로 이미 타당성이 입증된 행복영향요인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원칙임

- 비교가능성은 전라북도민의 행복현황이 분야별로 타시도에 비해 어느 수준에 와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지역성은 행복도를 측정하는 시대에 특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지역 고유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중요함

○ 2023 전북형 행복지표는 정서적 행복감, 경제, 사회적 관계, 가족, 문화여가, 건강, 복지, 안전, 환경, 주거, 교육 11개 분야로 구성함

- 타 시도 행복지표에 교육 분야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전북 행복지표에 교육 분야가 문화 여가와 사회적 관계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함
- 기존 지표가 통계지표와 설문조사를 통한 현황조사 지표가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명확하게 구분함
- 전북만의 지역성과 특성을 가진 지표는 '가족'으로 타 시도 행복지표와 다르게 단독적인 행복분야로 설정함

□ 2023 전라북도 행복 현황

1. 조사개요

○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4개 시군의 만 18세 이상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함

- 전북연구원 도민 행복정책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1단계 온라인 조사를 통해 454명을 조사하였고, ㈜지알아이리서치를 통해 14개 시군별 부족한 쿼터에 대한 온·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온라인 179명, 오프라인 367명을 조사함
- 표본은 14개 시군, 연령, 성 등 3단계 할당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선정

〈조사설계〉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23년 1월 30일(월) ~ 2023년 2월 17일(금)
조사대상	전라북도 14개 시·군 만 18세 이상 지역주민
표본수	총 1,000명
조사방법	온·오프라인 조사
표본추출방법	할당표집방법(Quota Sampl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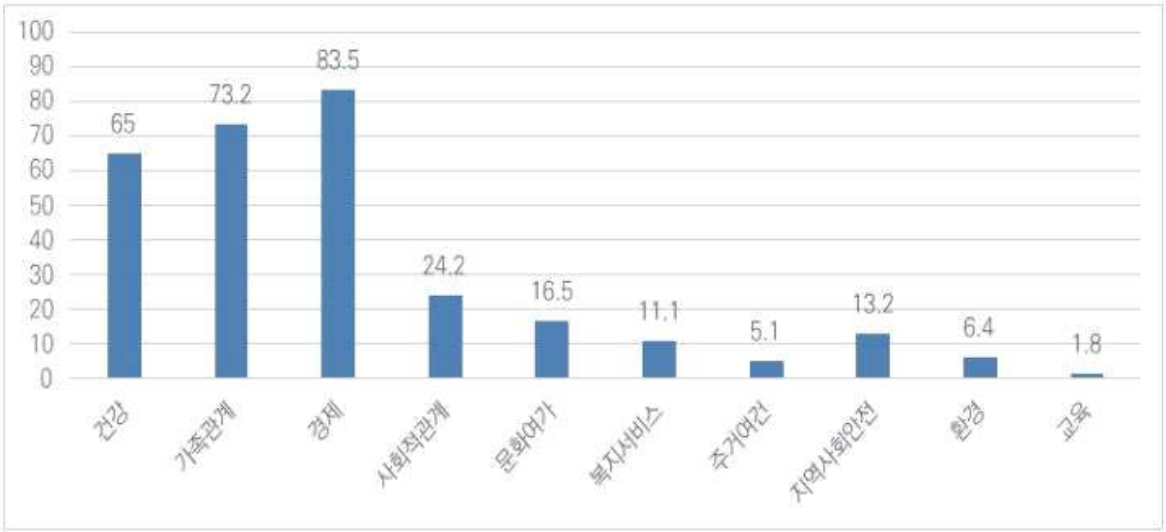
2. 전북도민 행복현황

○ 전북 도민이 인식하는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3순위 종합)은 1순위 경제(83.5%), 2순위 가족관계(73.2%), 3순위 건강(65.0%) 등 순으로 9순위 주거여건(5.1%), 10순위 교육(1.8%) 순으로 나타남

- 전북도민 행복영향 요소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가족이 항상 2, 3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가족공동체기반의 전라북도의 사회적 특질이 잘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가족의 행복과 본인의 행복을 일치시키는 전북도민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음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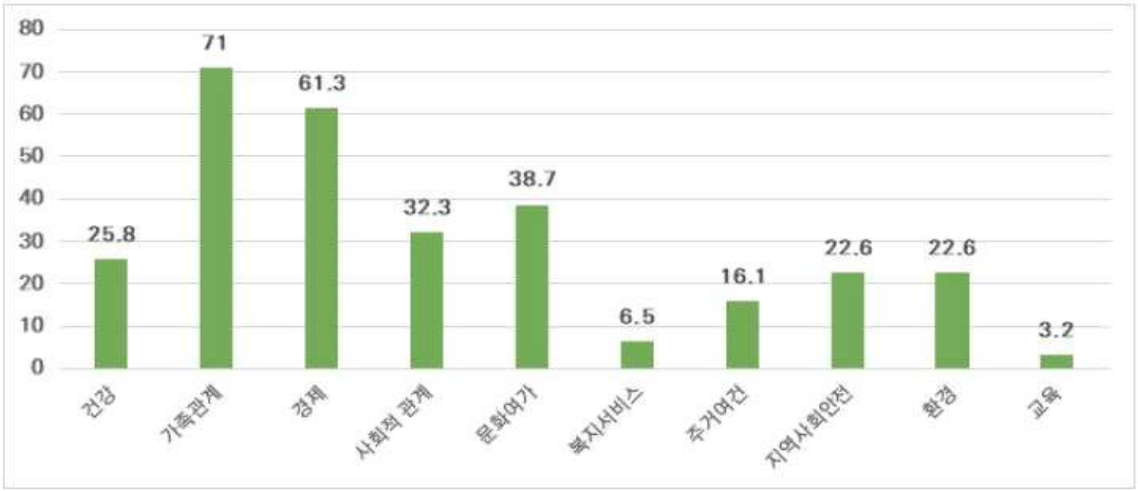
자료: 김동영(2023).

○ 전북도민의 현재 가장 만족하는 분야는 1순위 가족관계(71.0%), 2순위 경제(61.3%), 3순위 문화여가(38.7%) 등 순이었고 8순위 주거여건(16.1%), 9순위 복지서비스(6.5%), 10순위 교육(3.2%) 순임

- 전라북도의 1인당 GRDP는 30,912천원(2021년 기준, 통계청)으로 도 지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수준이 낮지만 경제적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 객관적 경제수준과 경제적 만족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현재 가장 만족하는 분야〉

(단위 : %)



자료: 김동영(2023).

○ 전북도민의 행복도에서 가장 취약한 지표는 남성은 교육, 여성은 경제, 1인·4인 가구는 복지, 2~3인 가구는 경제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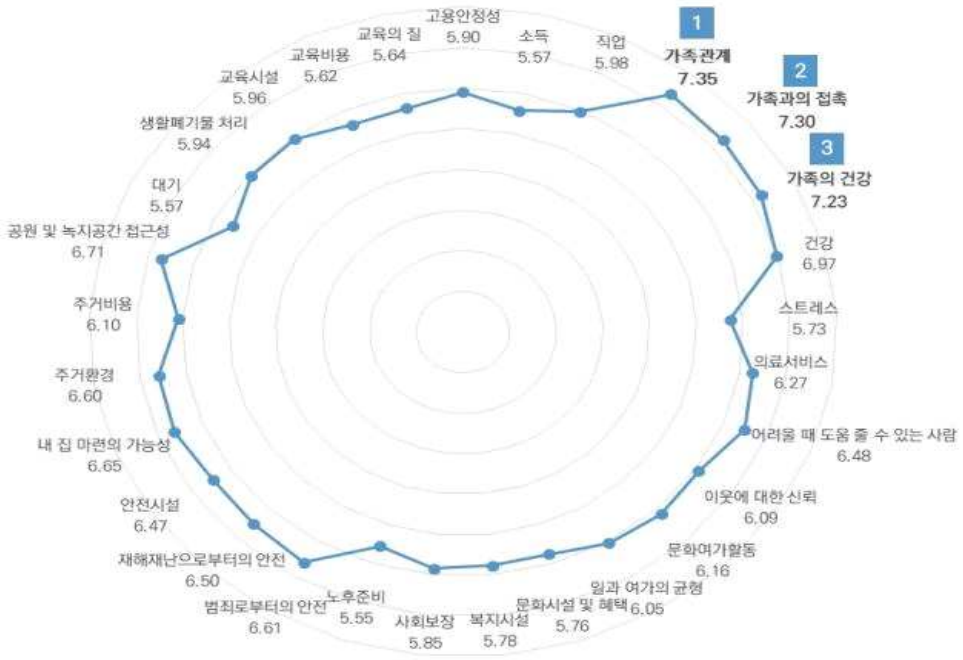
- 성별에 따라서 남성은 교육(5.78점), 여성은 경제(5.56점)가 가장 낮았고, 연령에 따라서는 18~20대와 60대 이상은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30~40대는 교육, 50대는 복지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음
- 소득에 따라서는 200만원 미만은 경제, 200~400만원 미만은 복지, 400만원 이상은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
- 가구별로는 1인 가구와 4인가구는 복지, 2~3인 가구는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
- 지역에 따라서는 중추도시권과 동북권, 동남권은 복지, 새만금권과 서남권은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

○ 전북 행복지표의 세부지표 별로 주관적 만족감을 살펴보면 가족관계 등 가족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으로 높고, 노후준비와 교육에 대한 만족이 낮음

- 가족관계(7.35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가족과의 접촉(7.30점), 가족의 건강(7.23점) 순으로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건강(6.97점), 공원 및 녹지 공간 접근성(6.71점), 내 집 마련의 가능성(6.65점), 범죄로부터의 안전(6.61점), 주거환경(6.60점),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6.50점) 어려울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6.48점)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만족감이 낮은 세부지표는 노후준비가 5.55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서 대기환경과 소득(5.57점), 교육비용(5.62점), 교육의 질(5.64점) 등 순임

〈세부지표별 주관적 만족감〉



자료: 김동영(2023).

❍ 경제 세부지표의 만족도를 도민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용안정성과 소득이 높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가족관계 만족도는 배우자가 있을 때와 1인 가구보다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족관련 세부지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종일 때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음

❍ 건강 만족도의 경우 연령에 따라서는 40대보다 18~20대와 60대 이상의 스트레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1인 가구의 건강, 스트레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울 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은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다가 400만원이 넘어가면 줄어드는 특징이 있으며 동북권(무주, 진안, 장수)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여가 세부지표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문화여가 세부지표 만족도가 높았고, 30대보다 18~20대, 60대 이상의 문화여가활동과 문화시설 및 혜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복지서비스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고, 60대 이상, 배우자가 있을 때, 2인 가구, 서남권과 새만금권 지역의 만족도가 높은 편임

○ 지역사회 안전분야는 범죄로부터의 안전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높았고, 배우자가 있을 때, 200만원 미만보다 400만원 이상일 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만족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30대보다 50대, 18~20대, 60대 이상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개인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보다 400만원 이상일 때 만족도가 높음

○ 주거여건은 공통적으로 배우자가 있을 때, 개인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일 때 주거여건 세부지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1인 가구일 때 다른 가구 수 일 때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환경만족도는 전반적으로 30대 보다 60대 이상과 18~20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1인 가구보다 2~3인 가구의 환경 세부지표 만족도가 높음

○ 교육만족도에서 교육시설 만족도는 30대보다 18~20대, 60대 이상의 만족도가 높았고, 교육비용 만족도는 400만원 이상보다 200~300만원 미만 일 때, 1인, 4인 가구보다 2~3인 가구 일 때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의 질은 30대 보다 18~20대, 60대 이상일 때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정책적 시사점

1. 행복취약집단 집중관리

○ 행복감은 주관적 지표로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특히

행복도가 낮은 연령이나 지역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라북도민의 연령에 따른 현재 행복감은 50대(64.62점)가 가장 높고 이어서 18~20대(63.22점), 60대 이상(62.92점), 40대(62.56점), 30대(60.92점) 순으로 나타났고, 10년 후 행복감은 40대(75.74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73.33점), 18~20대(72.89점), 50대(71.49점), 60대 이상(62.89점) 순임

○ 전라북도 지역에 따른 현재 행복감과 10년 후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 현재 행복감이 가장 높은 전북 지역은 중추도시권(63.89점), 동북권(62.31점), 새만금권(62.21점), 서남권(62.00점), 동남권(60.38점) 순인 반면, 10년 후 행복감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남권(71.36점), 중추도시권(69.72점), 새만금권(68.61점), 서남권(69.44점), 동북권(67.32점) 순임

- 중추도시권: 전주, 익산, 완주/동북권: 무주, 진안, 장수/동남권: 남원, 임실, 순창/서남권: 정읍, 고창/새만금권: 군산, 김제, 부안

○ 소득에 따른 도민의 주관적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 현재 행복감은 400만원 이상(65.92점)이 가장 높고, 300~400만원 미만(64.79점), 200~300만원 미만(62.48점), 200만원 미만(60.55점) 순으로 나타났고, 10년 후 행복감은 300~400만원 미만(71.93점)이 가장 높고 400만원 이상(70.71점), 200~300만원 미만(70.56점), 200만원 미만(66.36점) 순임

○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와 10년 후의 전라북도민의 행복도는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60대 이상, 지역별로 보면 동남권과 동북권, 소득별로 보면 2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취약지표는 20~30대의 주거문제, 200만원 미만의 경제문제, 동남권. 동북권의 복지서비스 등은 행복취약집단별 가장 낮은 분야별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행복도의 개선을 위해 행복취약집단과 행복취약집단의 행복취약지표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외로움대응(정책)부서 신설검토

○ 전라북도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추이를 2015년과 비교하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경우는 약 2.4%p 낮아졌고,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는 경우는 약 2.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2015년에 비해 전북도민의 사회적 관계망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전북의 자살충동정도는 2021년 기준 28.5%로 전국 평균(26.0%)보다 2.5%p 높고, 전북의 학교생활만족도는 41.5%로 전국평균(51.0%)보다 9.5%p 낮음

○ 이처럼 도민의 행복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나 교우관계 등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은 전북도민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만남의 빈도가 줄어드는 환경에서의 사회적 공동체의 취약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면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은 2018년 외로움부서를 신설하고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위한 정부차원의 실천적 행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문제 담당 장관직을 신설하고 정부가 직접 국민의 정신건강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

○ 전라북도민의 사회적 관계망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행복감이 낮아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고립과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공적영역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전라북도 차원의 외로움대응(정책)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고령자 자살률 및 1인가구 등의 외로운 집단에 대한 정책적 실천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음

5. 정책지원관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3. 7.)–

Ⅰ. 들어가며

1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법령상 근거가 부재하다는 사유로 무효 판결을 받아 무산됨(박순종, 2021: 120;박순종, 박노수, 2014:6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행정수요 증대 및 다양성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의 도입에 대하여 지방의회 등은 오랫동안 요구함
- 이에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었으며, 구체적 명칭은 ‘정책지원관’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2 지방의회에 대한 대규모 정책지원관의 도입으로 이에 대한 큰 기대와 반응에도 불구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혼란함과 성과에 대한 의구심 등이 제기되고 있음

- 광역의회 약 430명, 기초의회 약 1,460명 등 2,000명에 가까운 정책지원관이 지방의회에 도입됨에 따라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질 제고 등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청년 등의 취업시장 활성화 등 정책지원관에 높은 기대감으로 제도가 출발함
- 그러나 구체적인 매뉴얼 등이 부재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책지원관의 배치, 업무의 배분 등의 문제로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임

-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정책지원관이 도입이 과연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지 등 제도의 성과 자체에 대한 의구심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책지원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운영 1년 동안 발생한 주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Ⅱ.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1 정책지원관의 주요 내용 및 운영 현황

-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서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음

〈표 1〉 정책지원관의 주요 내용

구분	법령명	내용
설치	지방자치법	제41조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명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직무범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① (생략)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이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임용절차	지방자치법	제41조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 7급 이하 ⑥ 제6장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배치형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⑥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정책지원관의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의회의 경우 대부분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있으며, 울산·세종시의회는 담당관실에(의회사무처), 서울시의회 등은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여 배치하고 있음

- 구체적인 직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2023년 8월 현재 정책지원관의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의회는 15개에 불과함(광역 2개, 기초 13개)

 •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을 통하여 정책지원관의 구성·운영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대부분 구체적인 정책지원관의 신분이나 직급,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또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한 경우에도 정책지원관의 직무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방자치법」 등에서 명시된 사항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임

2 정책지원관 운영의 주요 문제

○ 정책지원관에 대한 명확한 업무 범위 및 내용 제시 미흡

- 「지방자치법」 등은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관하여 동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직무 범위 등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 지방의회의 역량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그러나 정책지원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 지방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지방자치법」 등과 같이 추상적·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배분에 대한 이해의 차이,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직무 범위에 대한 이해의 차이의 문제는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정책지원관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의원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쏠리면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빈번한 퇴사 등이 발생해 제도운영의 안정성까지 위협받고 있음

○ 기존의 의정활동 지원 인력·조직과의 업무 중복

- 기존의 지방의회에는 지방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 부서 및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광역의회의 경우 입법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담당관 및 예산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담당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광역의회의 경우 입법조사관 등의 별도의 지원인력을 두기도 함

- 이렇게 기존의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부서·인력이 있는 경우 정책지원관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내부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바, 이에 대한 업무조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은 미흡한 실정임

〈표 3〉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기구 비교

구 분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입법·예산지원 전문인력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68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영 제36조	• 법적근거 없음(각 지방의회 조례 및 규칙)
정 의	•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	•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 정책연구위원(부산) • 입법조사관(서울, 경기) • 예산분석관(서울, 경기, 충남, 부산)
목 적	• 위원회 자치입법활동 지원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 입법·정책·예산분야
업 무	• 의원과 청원 등의 심사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 §47(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48(서류제출 요구) • §49(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50(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보고의 처리) • §51(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 §52(의회규칙) • §53(회의규칙)	• 시정/도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 업무보고 등 지원 •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등에서 업무규정
정 수	•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별표5]	• 의원정수 1/2 범위 내	• 지방의회 자율결정

* 출처 : 류춘호(2022), p. 395 재인용.

○ 정책지원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의 문제

-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에 따라 상임위원회, 의회사무처 내 기존 부서, 의무사무처 내 별도 신설 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치되고 있음

- 그러나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정책지원관에게 부여되는 업무는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임

- 예컨대, 상임위원회에 배치될 경우, 전문위원과의 업무 배분 및 감독권자에 대한 논의 등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조례의 성안을 지원하는 정잭지원관이 해당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위원에게 감독받는 비정상적인 운영이 발생하기도 함

○ 정책지원관의 빈번한 퇴사 및 타 지방의회로의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문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운영상의 혼란과 갈등은 결국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의 잦은 이탈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1년 동안 정책지원관이 이러한 잦은 이탈은 각종 언론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함

- 이러한 잦은 이동은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정책지원관이 업무의 '경험'으로 인한 전문성보다는 단순히 '경력'으로 인한 형식적 전문성만 높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형식적 전문성은 결국 정책지원관이 실질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뿐더러 정책지원관 제도의 성과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Ⅲ. 지방의회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지원관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관련하여 배치 장소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해야 함

-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경우

 • 해당 상임위원들과의 보다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업무 영역이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음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 등과의 업무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칫 정책지원관이 위원회 업무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지원을 동시에 하는 경우 업무과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처에 배치할 경우

 •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별개로 지방의원 개인의 관심영역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며 조례의 성안(정책지원관 지원)과 검토과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이 분리됨에 따라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결과정을 기대할 수 있음

 • 반면, 일부 정책지원관에게 업무가 편중될 우려가 있으며, 정책지원관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

○ 정책지원관의 선발 단계에서부터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고려하여 차별적인 임용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지원관을 선발해야 함

- 반면, 의회사무처에 배치할 경우, 해당 의회에서 정책지원관에게 요구하는 기능을 구분하여 각 기능별 전문가를 선발해야 할 것임

 • 예컨대, 만약 의정활동의 지원을 입법지원, 정책지원, 예산지원, 홍보지원 등으로 구분한다면, 각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예, 학력, 경력, 주요 성과물 등)을 갖춘 사람을 정책지원관으로 선발·채용해야 함

 • 실제로 사전에 정책지원관의 업무영역, 내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로 정책지원관을 선발함에 따라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방의회가 기대한 역할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책지원관으로 인한 한계가 드러나기도 함

○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방의회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에 어떠한 지원기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 이하의 내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과 별도의 입법조사관과 같은 위원회 지원인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 입법담당관, 예산담당관과 같은 지방의원의 의정기능을 지원하는 부서가 존재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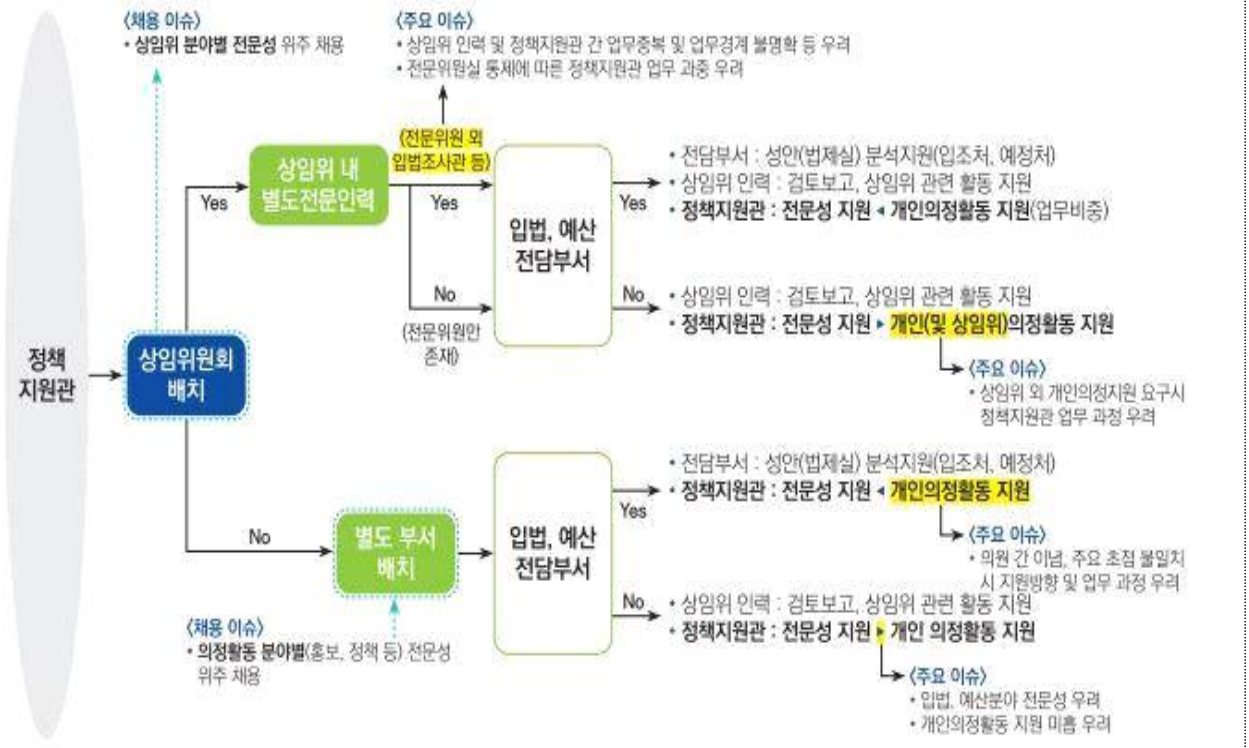
○ 정책지원관의 배치, 기존의 의정활동 지원기구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업무 배분 및 우선순위 부여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기존의 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처음부터 정책지원관에게 모든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각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즉, 지방의회의 특성,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지원관이 더 전문적인 의정기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둘 것인지, 지방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임

〈그림 1〉 지방의회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지원관 업무 선정 절차도(예시)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1. “몰라서 더 낸 세금, 납세자보호관이 찾아낸다”
- 도민 480명에게 지방세 2억 7,500만원 돌려줘

–경상남도(2023. 8. 3.)–

- 자경농민 상속농지 비과세, 다자녀·장애인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누락분 찾아내
- 납세자보호관 제도 주요 사례담은 영상 제작 등 홍보 더욱 강화키로
- 외국어(중국어·영어·베트남어)로 된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 제작·배부

○ 경상남도는 도민이 불필요하게 많이 납부한 지방세를 찾아내 480명에게 총 2억 7,500만 원을 환급했다고 2일 밝혔다.

○ 도는 도민의 지방세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면서 지방세에 대해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금을 과다 납부한 사례를 찾아 환급해주는 ‘찾아서 해결하는 선제적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에는 서민주택과 산업단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5억 원을 환급하여 행정안전부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 올해 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도내 전 시·군의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과세자료를 대상으로 ▲자경농민 농지 상속 취득세(2%) 비과세 여부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 3자녀)의 차량 취득세 감면 신청 여부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의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 그 결과 과다 납부한 1,036건을 찾아내 시·군 세무부서의 최종 확인을 거쳐 해당 도민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487건, 총 2억 7,500만 원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이 부과 취소 또는 환급됐다.

○ 도는 이러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과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었다.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해 중국어·영어·베트남어로 된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도 새로 제작했다.

○ 주요 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홍보 영상은 도 공식 유튜브채널인 ‘경남TV’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안내 포스터와 카드뉴스는 도 공식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 게재돼 있다.

○ 포스터, 리플릿과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는 도내 각 시·군의 민원부서와 세무부서,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시군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배부·비치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내 구석구석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도민과 시·군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적극행정으로 찾아내 돌려드리게 됐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도민께서는 언제든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 충북도,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충청북도(2023. 7. 31.)-

○ 충북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은 충북도가 올해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 24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8월 1일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 지원대상은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충북도내 의료기관에서 난자 냉동 시술을 한 여성으로 중위 소득 180% 이하이며 난소기능 검사 결과 지원대상에 적합해야 한다.

○ 충북도는 1인당 2백만원의 시술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0명을 지원하며 내년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경제활동 등으로 결혼 시기가 늦어 지나, 향후 아이를 기대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라며, “꼭 필요한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여성
- 충청북도 의료기관에서 공고일 이후 난자 냉동을 시술한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1.5 ng/mL 이하
-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 비용(주사료, 약제비 등)

❍ 지원금액 : 1회,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 본인 부담 시술 후 지원

❍ 지원규모 : 10명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선착순, 예산범위 내

❍ 소요예산 : 2,000만원(도비 100%)

❍ 신청방법 : 수행기관 직접 방문, 시술 증빙서류 제출

❍ 대행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 지원절차

난자 냉동 시술 민원인 ↔ 도내 의료기관*	▸ 본인 부담 시술 * 도내 난자 냉동 시술 가능 병원
⇓	
지원금 신청 민원인 → 인구보건복지협회	▸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 본인 방문 신청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	
지원대상자 선정 인구보건복지협회	▸ 자격여부 확인 - 주소지・거주기간・AMH 수치・소득수준 ▸ 진료여부 확인 - 진료내용·진료비 등
⇓	
지원금 지급 인구보건복지협회 → 민원인	▸ 지원횟수 1회 * 신청일 기준 선착순 ▸ 1회,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3. 전국 최초 민간위탁 종료 후 고용안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2023. 8. 7.)–

- 10인 이상 대량 실적 시 적용 근거 조례 마련‥21일까지 도민의견 수렴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10인 이상 대량실직 노동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지난 2월 민간위탁 종료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장 노동자가 대량 실직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진 사례에 비춰 향후 집단 고용위기 발생 시 해결에 필요한 지원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 제주도는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량실직 발생으로 인한 고용안정 지원 노력, △고용안정 지원 대책 협의를 위한 노정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 △실직 및 이직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이다.

-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대량실직이 일어났을 경우, 노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실직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 행정 뒷받침과 동시에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 재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인한 10인 이상의 집단 고용위기 발생 시 선도적으로 고용안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향후 대량실직 시 노정협의체의 신속한 가동으로 고용안정 지원 정책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정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 사업주가 30명 이상 대량실직의 고용 변동이 있는 경우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고용유지(안정), 전직 및 재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창출 장려금 등 기업지원, 실업급여·융자 등 근로자 생활안정, 심리안정지원, 노사협의, 기업회생, 임금체계 개편 등 컨설팅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4. 국·공립어린이집, 아동돌봄센터 입지분석해 확충 최적화지역 도출한다.
- 2023년 데이터 분석 모델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

-경기도(2023. 8. 17.)-

- 국공립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보육취약지역 분석
- 초등돌봄수요 예측 및 아동돌봄센터 우선 설치지역 입지 분석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우선 보강지역 분석
- 생활인구 상시분석 서비스 기능 개선 및 고도화

○ 경기도가 주거인구, 유동인구 분석 등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보육취약지역, 소방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우선 보강지역 등 도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4종 상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구축한다.

○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데이터 모델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갖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방향성을 논의했다.

○ 이번 사업은 이미 검증된 분석 모델 활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보육취약지역 분석 ▲아동돌봄센터 입지분석 ▲소방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우선 보강지역 분석 ▲생활인구 상시분석서비스 기능개선 및 고도화 총 4개 상시분석 서비스가 대상이다.

○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보육취약지역 분석은 연령대별 인구추계와 영유아 인구 밀도 현황 등을 통해 보육취약지역을 분석하는 서비스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지 선정에 활용 가능하다.

○ 아동돌봄센터 입지분석은 초등 돌봄수요를 예측하고, 가구특성을 고려한 신규돌봄센터 우선 설치 지역을 시각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 소방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우선 보강지역 분석은 지역별 화재 피해

현황, 출동 현황 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긴급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 보강 필요 지역을 알 수 있다.

○ 생활인구 상시분석서비스 기능개선과 고도화는 행정동별, 월별, 연령대별 인구 이동 패턴, 카드 소비 패턴 등 지역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현황 데이터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 도는 12월까지 데이터분석 모델 고도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은 데이터에 기반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데이터기반 도정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편 경기도는 ▲관광 ▲농업가뭄 ▲공공버스 ▲페이퍼컴퍼니 ▲생활인구 ▲지역화폐 ▲야생멧돼지 ▲폐기물 ▲버스안전지수 ▲교통보호구역 ▲부동산모니터링 등 13종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구축해 경기데이터분석포털(insight.gg.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5. 전국 최초 내부업무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통과

-전라남도(2023. 8. 4.)-

- 행안부 시범사업 완료 보고회서 성과 공유

○ 전라남도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내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에 성공, 지난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날 보고회에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자원정책과장,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HN클라우드(주), 시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결과와 성과를 공유했다.

○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지자체 시범사업’에 선정돼 130억 원의 국비를 확보,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간 전남도와 시군에서 사용하는 142개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이후 안정화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특히 이번 사업에서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내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전환에 성공했다. 전환의 핵심 요소인 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가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력이 결실을 봤다.

○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이 타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확산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클라우드 전환·통합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Ⅷ.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사례

Ⅷ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사례

1.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안전위원회(2022년 결산 분석/2023. 7.)–

□ 현황

○ 2022년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을 통해 편성된 출연금 7,500억원 중 75%에 해당하는 5,625억원은 기초지원계정으로 배분되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되었고, 25%에 해당하는 1,875억원은 정해진 산식에 따라 광역지원계정을 통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계정별 배분방식]

구분	배분대상	배분기준
기초지원계정 (75%)	인구감소지역(95%)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차등배분
	관심지역(5%)[1]	
광역지원계정 (25%)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90%)	산식[2]에 따른 정액배분
	재정과 인구여건을 고려하여 지원(10%)	

주: 1) 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말한다.(「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2) 해당 시·도 배분 금액 = 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times 0.9 \times \frac{A_i \times a1_i \times a2_i}{\sum(A_i \times a1_i \times a2_i)}$

A_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a1_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a2_i$ =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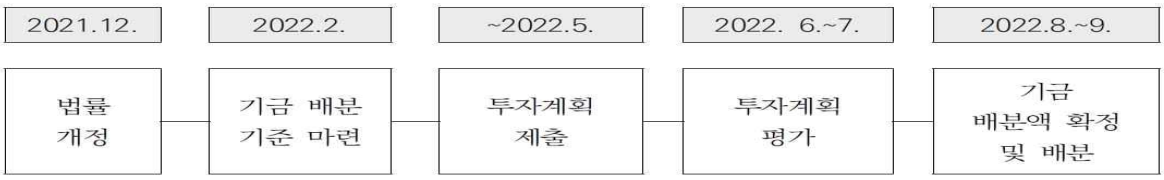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 분석의견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을 통해 출연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이 2022년 9월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 결과,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실집행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들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이 2021년 12월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의 마련도 2022년 2월에 이루어졌고, 이후 투자계획 제출 및 평가 등을 거쳐 기금액은 2022년 9월에 이르러서야 배분되었다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과정]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따라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방비 마련 및 사업추진이 용이하였던 광역지원계정 사업에 비하여 기초지원계정의 실집행이 부진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기금의 관리· 운용 경비를 제외하고 총 7,477억 2,400만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었으나,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예산을 편성한 금액은 6,659억 9,700만원에 불과하였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기초지원계정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실집행률이 7.0%, 기초지원계정 관심지역의 경우 실집행률이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		실집행			
	예산액	부처 교부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광역지원계정	187,124	187,124	184,848	162,988	24,136	88.2
기초지원계정 인구감소지역	532,800	532,800	457,249	31,854	500,946	7.0
기초지원계정 관심지역	27,800	27,800	23,900	109	27,691	0.5
합 계	747,724	747,724	665,997	194,951	552,773	29.3

자료: 행정안전부

- 이와 같이 기금 배분액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금 운영 첫 해에 기준 마련 등을 거쳐 실제 기금액 배분이 2022년 9월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실집행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과 다르게 중앙부처 차원에서 실집행을 고려한 지원액의 교부시점 및 규모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지원액 배분 후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관리 및 점검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투자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영농정착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이행점검 강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2년 결산 분석/2023. 7.)-

□ 현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농업 종사 경력이 3년 이하이고 나이가 만 40세 미만인 청년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388억 9,9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창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8,899	38,899			38,899	38,899			55,106
영농정착지원금	37,549	37,457			37,549	37,457			52,458
선발운영비	900	900			900	900			1,125
사후관리홍보	450	450			450	450			1,523

○ 동 사업은 매년 지원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신규 선정된 청년농업인의 경우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기준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기간 및 지원 금액]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1년차	100만원	90만원	80만원
2년차	90만원	80만원	-
3년차	80만원	-	-

□ 분석의견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자의 의무사항 미준수 및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의무사항 점검 및 정착지원금 환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정착금 수령에 따른 의무가 부여되는데, ①의무교육 이수(연간 최대 136시간) ②재해보험·의무자조금 가입 ③경영장부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④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⑤영농이행 실적 등 성실 신고 ⑥의무영농 기간 준수(지원금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중단,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지원금 환수 등의 처분이 부과된다.
- 그런데 각 지자체가 영농정착지원금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살펴보면, 위반건수가 2020년 591건, 2021년 1,007건, 2022년 1,28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약 15% 수준의 미준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0~2022년 영농정착지원금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단위: 명, 건, %)

구분	이행점검 대상	의무사항 미이행자 (비율)	의무교육 미이행	지해보험 미가입	자조금 미가입	경영장부 미기록	영농계획 미이행	전업적영농 유지미이행	총계
2020	3,200	387 (12.1)	303	162	25	44	22	35	591
2021	4,800	768 (16.0)	601	245	41	69	23	28	1,007
2022	6,600	1,024 (15.5)	883	204	27	118	21	32	1,28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영농이행 불성실 신고 및 의무 영농기간 미준수에 따른 지원금 부정수급 및 환수 실적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건수는 2018년 6건에서 2022년 69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수율은 최근 3년간 2020년 57.3%, 2021년 76.1%, 2022년 50.2%로 나타나는 등 부정수급 건수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환수금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2022년 영농정착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수,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부정수급 건수	6	10	27	65	69
부정수급액	15	36	143	293	227
납부할 금액(A)[1)]	15	36	143	293	227
환수액(B)[2)]	12	34	82	223	114
환수율(B/A)	80.0	94.4	57.3	76.1	50.2

주: 1) 납부할 금액 = 부정수급액 + 추가징수액
2) 해당연도 적발된 건에 대한 부정수급액 및 환수금액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금 수급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사항 및 영농정착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여, 단순히 청년농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영농정착에 필요한 기술 등을 익힐 수 있는 제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아동수당 급여 사업의 철저한 집행 관리 및 추계 적절성 제고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 보건복지위원회(2023년 결산 분석/2023. 7.)-

□ 현 황

○ 아동수당 급여는 「아동수당법」제4조에 따라 만 8세 미만(0~7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수당 지급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예산현액 2조 4,548억 4,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아동수당 급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아동수당 지급	2,403,949	2,379,318	-	22,321	2,455,297	2,455,297	100.0	-	9	2,256,398
아동수당 급여	2,403,499	2,378,868	-	22,321	2,454,847	2,454,847	100.0	-	-	2,256,348

○ 동 사업은 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 최초 도입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아동수당법」개정('19.1)에 따라 '19년 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아동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년 9월부터는 만 7세미만 아동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아동수당법」개정('21.12)에 따라 '22년 4월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아동수당은 본예산 편성 시 지급대상을 27만 3천명으로 편성하였으나, '21년 실제 출생아 감소 및 '22년 출생아 추계를 반영하여 '22년 제2차 추경 시 20만명으로 지급대상을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본예산 2조 4,034억 9,900만원에서 246억 3,100만원을 감액하여 2차 추경 시 2조 3,788억 6,800만원을 편성 하였다.

[2022년 아동수당 급여 예산 편성 내역]

구분	산출내역
아동수당 급여	(본예산) 2,732,794명* × 10만원 × 12개월 × 73.6%(보조율)×99.6%(집행계수) - 450백만원(조정계수) = 2,403,499백만원 (2차추경) 2,704,793명* × 10만원 × 12개월 × 73.6%(보조율) × 99.6%(집행계수) - 450백만원(조정계수) = 2,378,868백만원 *21년 실제 출생아 감소 및 22년 출생아 추계 변동에 따른 감액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분석의견

○ 첫째, 아동수당은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제2차 추경을 통해 246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연말에 수급자 규모 증가분 반영으로 법정의무지출인 아동수당의 예산 부족이 발생하여 예산 전용 및 예비비 편성을 통해 759억 7,900만원을 다시 증액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에 대한 부정확한 추계를 실시하였으므로 적정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2022년 아동수당 급여 사업의 결산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본예산으로 2조 4,03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2차 추경을 통해 246억 3,100만원을 감액하여 2조 3,78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연말에 예산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 및 예비비 증액을 통해 75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2조 4,548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은 103.2% 수준이다.

[2022년 아동수당 급여 사업 결산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부처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등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1)]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아동수당 급여	2,403,499	2,378,868	-	22,321	2,378,868	2,454,847	-	-	103.2

주: 1) 아동수당 급여 예산 부족에 따라 전용 22,321백만원, 예비비 53,658백만원 증액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아동수당은 2022년 제2차 추경('22.5) 시 '21년 출생아수 조정 및 '22년 출생아 수 감소를 사유로 총 246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다. '21년 출생아수는 예산상 27.9만명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출생아수는 26.1만명으로 1.8만명 차이가 발생하였다. '22년 출생아수는 '22년 1월 통계청 인구동향을 반영하여 예산상 추계한 27.5만명에서 1.8만명 감소한 25.7만명으로 재추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2년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출생아수도 15.4만명에서 1만명 감소한 14.4만명으로 재추계 하였다.

[2022년 제2차 추경 아동수당 수당 급여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아동 수당 급여	△24,631백만원 ① '21년 출생아수 조정 ('21.4~12월 실측값 반영) - 예산상 '21년 출생아수: 27.9만 / 실제 출생아수: 26.1만명 → △1.8만명 × 월 10만원 × 12개월 × 73.6% × 99.6% = △15,834백만원 ② '22년 출생아수 조정 ('22.1월 통계청 인구동향 반영) - 예산상 '22년 출생아수: 27.5만 / 재추계: 25.7만명 - 예산상 '22년 아동수당 지급받는 출생아 수* : 15.4만 / 재추계 : 14.4만명 * '22년 출생아는 태어난 달에 따라서 '22년에 지급받는 수당이 다름 ** 계산식 : (1월출생아수*12 + 2월출생아수*11 + ... + 12월출생아수*1) / 12 → △1만명 × 월 10만원 × 12개월 × 73.6% × 99.6% = △8,797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러나 2022년 11월에 출생아 수 변동, 차등보조율 지자체간 아동 수 변동, 해외출생아 등 수급자 규모 증가로 법정의무지출인 아동수당의 예산 부족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예산 전용(223억 2,100만원) 및 예비비(536억 5,800만원) 편성을 통해 총 759억 7,900만원을 다시 증액 편성 하였다.

[2022년 아동수당 급여 예산 변경 내역]

구분	산출내역
22년 본예산 ('22.1)	2,403,499백만원
제2차 추경 ('22.5)	▵24,631백만원 /21년 실제출생아(월평균 △18천명, 15,834백만원) 및 통계청 인구동향 '22년 출생아수 반영(월평균 △10천명, 8,797백만원)
자체전용 ('22.11)	+22,321백만원 /법정의무지출인 아동수당 급여 예산부족으로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전용
예비비 ('22.11)	+53,658백만원 / 출생아수 변동, 차등보조율 지자체간 아동수 변동, 해외출생아 등 수급자규모 증가분 반영

자료: 보건복지부

- 이처럼 아동수당은 지출의무가 명시된 재정수반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지출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예산 집행 시 감액 및 증액 편성을 반복함으로써 예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해 법정의무지출인 아동수당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아동수당 지급 시 해외출생아 및 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대상 추계 시 해외출생아, 난민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인원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아동수당 수급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 국내출생아, 해외출생아, 국적취득, 난민, 특별기여자가 해당된다. 하지만 그간 아동수당 예산 편성 시 국내거주 출생아만을 기반으로 대상을 추계하였으며, 해외출생아, 난민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0~2022년 아동수당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액	실집행액	국내거주[1)]	해외출생아	난민	계
2020년	2,301,748	2,296,612	2,586,112	19,169	123	2,605,404
2021년	2,218,555	2,182,048	2,428,874	20,524	127	2,449,525
2022년	2,454,847	2,444,992	2,711,206	24,932	153	2,736,291

주 1) 국내거주 = 합계 - 해외출생아 - 난민
1. 합계는 월별 평균인원임(출처: 행복e음)
자료: 보건복지부

- ‘2020~2022년 아동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해외출생아 및 난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출생아는 2020년 19,169명에서 2022년 24,932명으로 30.1% 증가하였으며 난민도 2020년 123명에서 2022년 153명으로 24.4% 증가하였다.
- 이처럼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해외출생아 및 난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 추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부정확한 예산 추계에 따른 예산 부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향후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추계 시 국내거주 출생아뿐만 아니라 해외출생아, 난민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아동수당 대상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대구 중구의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2023. 7.)-

□ 감사배경 및 목적

○ 청구인(㉮㉮)은 2023. 2. 8.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이면서 대표자인 A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에서 이를 검토한 결과 지방의회의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를 실시

감사청구 요지

■ 구의원 A는 ㉮㉰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2022.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대표자인 ㉮㉯의 물품을 납품함

■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담당공무원은 ㉮㉰와 계약하여 납품받은 물품이 ㉮㉯에서 납품된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

□ 감사중점 사항

○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대구광역시 중구를 대상으로 감사청구사항 범위 내에서 A 의원이 대표자인 ㉮㉯가 대구광역시 중구 및 그 산하기관 등과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와 ㉮㉯ 및 A의원의 관련성 유무를 중점 점검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 감사는 2023. 4. 3.부터 같은 해 4. 14.까지 10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

□ 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3. 4. 13. 대구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 대책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3. 7. 13.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감사청구사항 관련 법령 개요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 및 벌칙

구분	지방계약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일자	2005. 8. 4. ※ 제정 시부터 수의계약 제한 규정 존재	2021. 5.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 (발췌)	○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6.「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조항 등 (발췌)	○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

(단위:건, 명)

구분	합계	주의	통보(인사자료)	통보
건수(인원)	3	1	1(1)	1

○ 감사결과 ㉮㉯는 회사 대표인 A가 지방의회의원이 되어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받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 명의를 빌려 대구광역시 중구 등과 총 8건(16,801천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A에 대해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에 대해 수의계약을 제한하며, ㉮㉯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의계약 체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등 총 3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함.